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법학석사학위논문

중국 세법상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20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세법전공
남 치 동

국문초록

1987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에 관하여 수행하는 기초적인 작용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자의 투자의욕과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중국 내 투자의 증가를 저해하는 세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중국에서 현대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방법 중,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경제적 이중과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주주가 법인을 거쳐 버는 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게 과세되어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일 뿐이다.

중국법상에서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배당받는 개인의 측면에서만 조정을 진행하여 주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단계로, 현재에는 적격 법인사이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주주의 측면에서는 그가 주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중국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는 일정한 정도에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존재한다. 즉 일정한 부분의 현금배당에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도 부단히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이중과세 조정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

로만 본다면 차등세율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당소득공제방식 중의 한 가지 형태인 절반소득제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 이중과세, 경제적 이중과세, 중국 소득세제, 이중과세조정방식
학 번 : 2014-22081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제2장 경제적 이중과세의 의의와 문제점 ····· 7
제1절 중국법상 배당의 의의, 요건, 현황 ····· 7
1. 중국법상 배당의 의의 ····· 7
2. 현금배당의 요건 ····· 10
3. 중국의 현금배당 현황 ····· 10
제2절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기본논의 ····· 11
1. 이중과세의 함의 ····· 11
2. 이론적 지지 ····· 16
제3절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 ····· 20
1. 공평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21
2. 효율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24
3. 중국법상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 28
제4절 소결 ····· 30

제3장 중국 현행법상 배당의 과세구조 및 이중과세조정 ····· 33
제1절 중국법상 배당의 과세구조 ····· 33
1. 이익을 배당하는 회사의 단계에서 ····· 33
2.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 37
3. 유보이익에 대한 잠재적 과세중복 ····· 40

제2절 중국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연혁 ····· 41
1. 2005년 이전 ····· 41
2. 2005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 44
3. 2008년부터 2012년 이전까지 ····· 47
4. 2012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 ····· 51
5. 2015년 이후 ····· 55
6. 중국 현행법상 이중과세 조정 ····· 56
제3절 소결 ····· 58

제4장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유형 ····· 60
제1절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식 ····· 60
1. 조합과세방식 ····· 60
2.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의 조정방법 ····· 62
3. 배당받는 주주 측면에서의 조정방법 ····· 65
4. 혼합법 ····· 67
제2절 OECD 국가의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 ····· 68
1. OECD 국가들의 이중과세조정 제도 선택과 그 추세 69
2. OECD 국가 이중과세조정제도 선택의 새로운 발전 ·· 71
제3절 소결 ····· 74

제5장 중국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76
제1절 대안의 평가기준 ····· 76
1. 경제성장원칙 ····· 76
2. ‘적절해소’ 원칙 ····· 77
3. 세수중립원칙 ····· 77

4. 사회안정원칙 ····· 77
5. 행정효율원칙 ····· 78
제2절 중국 법제를 고려한 대안의 분석 ····· 79
1. 경제적 중복과세조정방식에 대한 비교 ····· 79
2. 자금조달 방식의 선택상의 왜곡에 대한 조정 ····· 82
3.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 선택에 대한 분석 ····· 83
4. 배당세액 공제 방식의 선택에 대한 분석 ····· 84
5. 차등세율방식 선택에 대한 분석 ····· 85
6. 배당공제방식의 선택에 대한 분석 ····· 86
제3절 소결 ····· 86

제6장 결론 ····· 88

참고문헌 ····· 91
부록 ····· 95

<표 목차>

「표 1」 각 연도별, 세수별 세금 총액과 비례 ····· 3
「표 2」 2012-2014년도 세금 종류별 세금 징수 금액 ····· 3
「표 3」 중국 현행법상 기업소득세 납세주체와 그 적용세율 ····· 36
「표 4」 개인소득세 납세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 39
「표 5」 2005년 이전 각 소득에 대한 세율 ····· 42
「표 6」 2005년 이전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 43
「표 7」 2005년 이전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 44
「표 8」 2005-2008년 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 45
「표 9」 2005-2008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 46
「표 10」 2005-2008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 47
「표 11」 2008-2012년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 48
「표 12」 2008-2012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 50
「표 13」 2008-2012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 50
「표 14」 2012-2015년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 51
「표 15」 2012-2015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 54
「표 16」 2012-2015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 54
「표 17」 2015년 이후 각 소득에 대한 세율 ····· 55
「표 18」 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 과세구조 ····· 56

「표 19」 OECD 국가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제도 선택 현황 ····· 70
「표 20」 각종 이중과세의 조정방식의 효과상의 비교 ····· 80
「표 21」 중국 현행법 조건상 각 조정방식의 세부담 비교 ····· 81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 현행법상 배당 구조 ····· 9
「그림 2」 조세평등 개념의 구조 ····· 22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현대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 하고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줄곧 중국 당국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온 기반이었다. 또한, 시장이 자원배분에 관하여 수행하는 기초적인 작용을 부각시키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질서정연한 현대적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투자자의 투자의욕과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중국 내 투자의 증가를 저해하는 세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중국에서 현대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 중의 세제 측면을 고려해보면, 아마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세금이 관련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목적이자 결과물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일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은 각 인(人)의 담세력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세부담을 쉽게 기타 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오늘날 소득세는 당위(當爲)로서 바람직한 세제로 여겨지고 있다.[1]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소득세를 도입한 후,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에서도 뒤이어 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2] 오랜 기간의 발전을 거쳐

1)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5, 261면.

소득세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의 세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세제개혁[3]이 시작되고, 뒤이어 "제9차 5개년 계획"[4]이 시작되면서부터, 소득세 세수의 규모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속하게 증가되었고, 소득세의 납세자에 대한 영향도 날로 증가하였다. 중국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의 통계자료(「표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세 총액은 1995년도의 1,009.74억 위안에서 2014년도의 32,018.8억 위안까지 20년 사이에 약 3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도의 16.72%에서 2014년도의 26.86%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근래 중국의 소득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增値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세금으로 되었다. (「표 2」[6] 참조)

---

2) 이창희, 위의 책, 박영사, 2015, 262-272면.

3) 중국의 세제개혁은 워낙 그 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4부터 진행된 세제개혁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① 세수구조를 조정하여 세금종류를 조정하고, ② 국가와 지방세의 범위를 다시 나누는 것 등이다. 이번 개혁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세수가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게 하였으며, 그 후의 세제개혁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4) "5개년 계획"은 중국 국민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장기적인 계획에 속한다. "5개년 계획"은 주요하게 국가의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 생산력의 분배와 국민경제의 비례에 관하여 계획하고,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에 목표와 방향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은 1953년에 시작되었고, "제9차 5개년 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의 계획을 가리키며, 2016년 현재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단계에 처하여 있다.

5) http://www.stats.gov.cn/ (중국국가통계국 사이트).

6) 위의 사이트(중국국가 통계국 사이트).

단위: 억 위안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소득세총액		세수총액
	금액	비례	금액	비례	금액	비례	
2014[7]	7,376.61	6.19%	24,642.2	20.68%	32,018.8	26.86%	119,175
2013	6,531.53	5.91%	22,427.2	20.29%	28,958.7	26.2%	110,531
2012	5,820.28	5.78%	19,654.5	19.53%	25,474.8	25.31%	100,614
2011	6,054.11	6.75%	16,769.6	18.69%	22,823.8	25.43%	89,738.4
2010	4,837.27	6.61%	12,843.5	17.54%	17,680.8	24.15%	73,210.8
1999	413.66	3.87%	811.41	7.6%	1,225.07	11.46%	10,682.6
1998			925.54	9.99%	925.54		9,262.8
1997			963.18	1.17%	963.18		8,234.04
1996			968.48	14.02%	968.48		6,909.82
1995	131.3	2.17%	878.44	14.55%	1,009.74	16.72%	6,038.04
1994			708.49	13.82%	708.49		5,126.88

「표 1」각 연도별, 세수별 세금 총액과 비례

단위: 억 위안							
	각항 세수총액	중국 국내 증치세	영업세	국내 소비세	관세	개인 소득세	기업 소득세
2014	119175.3	30855.36	17781.73	8907.12	2843.41	7376.61	24642.19
2013	110530.7	28810.13	17233.02	8231.32	2630.61	6531.53	22427.20
2012	100614.3	26415.51	15747.64	7875.58	2783.93	5820.28	19654.53

「표 2」2012-2014년도 세금 종류별 세금 징수 금액

세계 각국의 세제는 소득과세의 측면에서 대부분 유사한 과세 체계를 사용하는데, 즉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이다. 그중 법인이 얻은 소득의 경우, 먼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징수하고, 세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주주의 단계에서 또

7) 2016년 3월 현재 2015년의 통계수치가 아직 없는 관계로 2014년부터 열거하였다.

한 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세제의 공평과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이런 이중과세는 주주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회사의 투자, 생산, 분배와 노동력의 수요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더 나아가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8] 그에 더하여 소득세가 세계 각국의 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소득세 내부의 이중과세로 인하여 이를 직접 부담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타격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분립된 상황에서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조화를 실현하여 세제의 경제조절 기능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세계 각국과 지역의 세제 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었으며 상술했던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증대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회사를 놓고 보면 현재 중국에서도 법인이 소득을 얻을 때 기업소득세를 한 번 과세하고, 주주가 배당받았을 때 주주에게 기업소득세나 개인소득세를 또 한 번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소득세가 중국에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액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폐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금배당 중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주주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투자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중국 세제개혁 중의 중요한 이슈로 되었다.

---

8) 陈少英, 公司涉税法论, 北京大学出版社, 2005, 33页.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경영 또는 재정학 분야에서 접근한 연구와 분석이 많았고,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배당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하여 법학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중과세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와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며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과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는 비교연구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주요한 쟁점들인 “현금배당”과 “이중과세”에 대한 개념적인 해석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런 이중과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선 중국 현행 세법 중에서 현금배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 징수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의 연혁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조성방식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음,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가 OECD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조정

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 현재의 과세제도하에서, 이중과세조정제도가 따라야 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현재 학계에서 제시하는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관한 관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 중국 현재 상황에 보다 적합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찾아본다.

제2장 경제적 이중과세의 의의와 문제점

중국법상 현금배당에 대한 과세구조와 그중에 나타나는 경제적 이중과세 및 그 조정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한 이슈로 되는 “현금배당”과 “이중” 또는 “이중과세”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에 관한 중국의 현실 상황과 법 규정에 대하여도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제1절 중국법상 배당의 의의, 요건, 현황

현금배당(Cash dividend)은 이익배당의 한 가지 형태이며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금배당에 관한 논의는 이익배당으로부터 시작하겠다.

1. 중국법상 배당의 의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9] 중국의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에서 주

9)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중국「회사법」) 제166조 회사에서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을 배당할 때, 먼저 이익의 10%을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이미 회사의 출자자본의 50%인 회사는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그 전년도의 손실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이익으로 손실을 보충하여야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임의준비금을 공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전년도의 손실을 보충하고 준비금을 공제한 후 남는 세후이익이 있다면, 유한책임회사는 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제외로 한다.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손실을 보충하고 법

주에게 배당을 한다는 표현을 “일반배당(股利)”을 분배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배당(紅利)”를 분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10] 이런 단어들은 모두 배당이라는 뜻을 표현하긴 하지만,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 간다면, 일반배당은 미국 회사법상의 “Dividend”에 상당한 개념인바, 미국 학자 Hamilton의 견해에 의하면 “Dividend”는 회사가 현재 혹은 그 전에 누적한 잉여금(Surplus)에서 주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11]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분배 가능한 이익 중 주주에게 지불하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12]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배당은 확정비율을 가진 일반배당과 비율이 유동적인 특별배당으로 나뉜다. 그중 일반배당은 미국 법상의 “Mandatory dividend”로서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회사에 분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정 비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배당은 미국 법상의 “Discretionary dividend”로서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반 주주에게 지불하는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13](그림 1 참조) 중국 세법상, 일반배당과 특별배당에 관한 규정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특별배당과 일반배당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배당”이라고 일괄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정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했을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부분의 배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회사법」 제34조 주주는 실제로 출자한 비례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회사에서 증자할 경우, 주주는 실제 출자한 비례에 따라 증자한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 단 전체주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 한다.

10) 중국의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에서는 “股息”, “红利”라고 표현한다.

11)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PP. 388

12) http://baike.baidu.com/view/29385.htm (百度百科)

13) 刘俊海, 现代公司法(第三版)上册, 法律出版社, 2015, 377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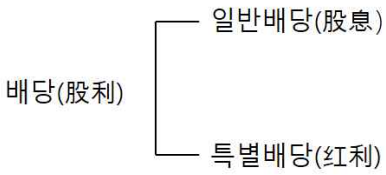

「그림 1」중국 현행법상 배당 구조

이익배당은 그 분배하는 이익의 종류에 따라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전자는 말 그대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 주식배당을 할 때에는 그 실질상 회사의 증자절차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거나, 자기주식을 다시 배당하는 격으로 되기에[14]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고 배당 받는 개인주주의 측면에서는 현행법상 잠정적으로 주식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에[15] 따라서 이중과세가 나타날 길이 없다는 것이 중국 세법의 일반적 이해이다. 하지만 현금배당은 회사에서 현금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상술했듯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배당하는 회사와 배당받은 주주가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존재하게 된다. 현금배당은 또한 현재 각국의 회사의 이익배당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고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익배당 형식이다.[16] 하여 본 논문은 이익배당 중에서도 경제적 이중과세가 나타날

14) http://baike.baidu.com/view/1062367.htm (百度百科)
15) 1998년「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데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转让股票所得继续暂免征收个人所得税的通知)」에 의하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6) 刘俊海, 위의 책, 378页.

수 있는 현금배당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2. 현금배당의 요건

중국에서는 회사의 상장여부를 막론하고,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모두 현금배당을 할 수 있다.[17] 중국「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현금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세후 이익으로 그 전해의 손실을 보충하고, 이익의 10%를 법정준비금으로 공제하거나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의준비금으로 공제한 다음 잉여이익이 있는 경우 배당을 할 수 있다.[18] 즉 상술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내리게 되면, 유한회사는 출자비례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소유한 주식의 비례에 따라 배당한다.[19]

3. 중국의 현금배당 현황

배당을 하는지 여부와 배당액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당해 연도의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 절차를 거친 후 잉여금이 있는지를 보아야겠지만,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 결정되는 의사의 내용도 배당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회사의 경영진 혹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한다고 결의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다.

---

17) 중국「회사법」유한책임회사편 제37조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6) 회사의 이윤분배방안과 손실보총방안의 심사. (…)
중국「회사법」 주식유한회사편 제81조 주식유한회사의 회사정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9) 회사의 이윤분배방안. (…)

18) 중국「회사법」제166조 규정 참조.

19) 중국 「회사법」 제34조 주식이 실제로 출자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다. (...)

아쉽다면, 중국에서는 아직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 중에는 손실이 있는 회사도 있고 이익이 아주 적은 회사도 있지만, 배당을 실시하게 충분한 재원이 있는 일부 회사에서도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보다 높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이 주주의 눈앞의 이익보다 높다"는 이론 하에 준비금을 너무 높게 공제하거나 장기적으로 낮은 배당, 심지어 "0"배당 정책을 고수하여 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20]

이에 대비하여 중국의 증권감독관리회(이하, 증감회)에서는 2004년의 「사회 공중주주의 권익보호에 관한 약간의 규정」, 2006년의 「상장회사 증권발행관리방법」, 2013년 「진일보로 자본시장에서 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등 일련의 문서와 통지를[21] 통하여 배당을 격려하는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그 결과 상황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역시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의 배당 성향은 그리 높지 못한바, 2008년 이후에야 현금배당하는 회사의 수가 전체회사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22]

제2절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기본논의

1. 이중과세의 함의

이중과세란 동일한 혹은 서로 다른 세금징수 주체, 동일한 혹은 서로 다른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혹은 그

20) 刘俊海, 위의 책, 372页.
21) 이런 문서와 통지는 한국법상 "부령"에 상당하다.
22) 积极完善分红制度, 引导公司持续回报股东, 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xwdd/200808/t20080822686 25.html

이상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2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중과세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논의하여 그 함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1) 납세자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이중과세, 나아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동일한 세금유형인지, 혹은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납세자가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부담했다면 과세중복으로 보는 것이다.[24] 즉 납세자 갑이 소득세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다면, 그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납세자에게 과세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 단일세제를[25] 실행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러한 넓은 의미의 이중과세는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중국 현행법상에는 증치세(Value-added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영업세(Business tax),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토지증치세(Land Value-added tax), 방산세(Real Estate tax), 도시유지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차량구매세(Vehicle Purchase tax), 차선세(Vihicle and Vessel tax), 인화세(Stamp tax), 계세(Title Deed tax), 경작지점용세(Cultivated Land Usage tax), 담배세, 관세, 선박톤세(Vessel Tonnage tax),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Fixed Assets Investment Orientation Regulation tax)[26] 등 9가지 세금종류가 있고 세금 종류에 따라 과

23) 张守文, 税法原理(第六版), 2012.8, 北京大学出版社, 112页.
24) 张守文, 위의 책, 112页.
25) 한 국가에 세금 종류가 하나뿐이라면 단일세제 국가이고, 세제 구성 중에 여러 세금종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복합세제 국가이다.

세관청 혹은 해관[27]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28] 이렇듯 중국에서도 납세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의 이중과세는 존재하지만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합세제국가인 이상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2) 징수주체의 측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만약 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세금징수 주체에 의하여 세금이 과세되었다면, 이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세금의 징수주체의 측면에서 보는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에서 관할권이 다름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이런 이중과세가 생긴 원인은 서로 다른 세금 징수 권한이 있는 여러 주체가 그 권한에 의한 과세 관할권을 행사하여 생긴다.[29] 과세 관할권은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즉, ① 소득 원천지국의 과세 관할권과 ② 거주지국이 그 거주민에 가지는 과세 관할권이다. 예를 들어, A국에서는 속인주의 원칙은 적용하고, B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A국의 주민 갑이 B국에 거주하는 동안 B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A국과 B국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징수주체 측면에서의 이중과세가 나타난다. 이런 이중과세를 일반적으로 법률적 이중과세라고 한다. 물론, 이런 이중과세는 국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겠지만 상술한 상황이 한 개 국가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다.

---

26)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잠행조례」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생한 투자에 대하여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를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27) 관세와 선박톤세는 해관에서 직접 징수하고, 수입상품의 증치세와 소비세는 해관에서 대리징수 한다. 다른 세금은 모두 세무국에서 징수한다.
28) http://www.kuaiji.com/weixin/2121651 (会计网)
29) 张守文, 위의 책, 114页.

중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과 속인주의 원칙을 모두 사용한다.[30] 그리하여 투자자가 외국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외국에서 세금을 한 번 납부하여야 하고, 중국에서도 그 소득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중국「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중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 외국에서 얻었고,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31] 즉 동일한 소득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일정하게 공제하여 줌으로서 법률적(특히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이다.

3)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

30) 중국「개인소득세법」제1조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기업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설립한 기구 및 장소가 취득한 중국내의 원천소득 및 중국 국외의 원천 소득으로 당해 설립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잇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31) 중국「기업소득세법」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수입으로 이미 국경 외에서 기업소득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당기의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한도액은 당해 수입에 대하여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충당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 5개 사업연도 내에 매 사업연도에 계산된 충당한도액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충당할 세액과 충당한 후의 잔액과 충당할 수 있다.
(1) 거주자 기업은 중국 국경 외에서 원천한 과세수입
(2) 비거주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외기업으로부터 분여 받은 중국 국경 외에서 원천한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은, 그 국외기업이 국경 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 중 당해 수입이 부담한 부분은 당해거주자 기업의 충당 가능한 국외의 소득세액으로 하여, 본법 제23조에 규정한 충당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중국「개인소득세법」제7조: 납세의무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수득에 대해 본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혹은 그 이상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32]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본 이중과세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바로 현금배당에서 생기는 법인과 주주간의 이중과세이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모 년도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우선 법인의 측면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세후 이익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배당 받는 주주들의 측면에서는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회사 A가 모 년도에 얻은 사업소득과 그 소득에서 기업소득세를 뺀 세후 이익은 동일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과세 중복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중과세를 또 경제적 이중과세라고 하고, 본 논문에서 주로 연구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중과세는 회사와 개인주주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33] 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모두 국내 법인주주는 배당이익에 대하여 면세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그 원인은, 첫째, 배당을 받는 법인주주는 최종주주가 아니며, 개인주주야말로 최종적인 납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다.[34] 만약 한 회사가 그 구조상 여러 층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매 단계의 법인주주마다 모두 중복적으로 과세된다면, 그 회사 그룹의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개인주주

32) 李丰, “论对公司和股东的国内重复征税”, 税务与经济, 2003年第6期, 46页.
33) 肖棚, “所得税一体化研究”, 税务与经济, 2001年第2期, 25页.
34) 马杰, “我国股息经济性重复课税的法律规制研究”, 华东政法大学法学硕士论文, 2011年, 4页.

는 여러 번 중복된 세부담을 감수하여야 하고, 낮은 단계에 처하여 있는 법인주주일수록 그 부담은 아주 크게 된다. 하여 회사 사이의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것은 더욱 더 절실해 보인다.

2. 이론적 지지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현금배당 중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회사와 주주 두 개 측면에서 동시에 과세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이중과세의 타당성과 법인세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졌으며 이를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논쟁이라 한다.

1)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고전적인 세제(classical system)'의 이론적 기초이다.[35] 이는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의제된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주장한다.[3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은 스스로 하나의 실체로서 경제이익을 향유하고 또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거나 부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득세, 즉 법인세 역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회사라는 조직형식이 회사 아닌 기업의 조직형식, 예를 들어 개인기업 혹은 조합 등과 다르기에 회사는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7] 왜냐하면 법인은 그에 속하는 구성원의 의지와 이익으로부터 구별되

35)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5, 514면.
3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81&cid=42131&categoryId=42131 (법률용어사전)
37) 王利明, "论法人的本质和能力", 民商法研究第三辑, 法律出版社, 2001, 19页.

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인하여 기타 경제조직과 같이 자주적으로 그 경제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외에 특수하게 유한책임의 권리를 향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한책임이라는 권리는 출자자로 하여금 출자 자본에만 한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회사와 출자자가 경제적으로 분리되게 하였다. 이런 특수한 지위에 기하여 회사가 출자자에서 독립된 인격이 있는 법률적 실체로 되고 출자자들은 회사의 채무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특수한 의무, 즉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의 이론상의 주요한 논거로는 다음이 있다.

(1) 동등납세의무 원칙. 일부 학자들은 법인은 일단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주식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대신 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권, 곧 경영권은 포기한 것이다. 대량의 주식이 아주 분산적으로 분포된 회사는 어느 한 개인이 소득을 얻기 위한 도구만은 아닐 것이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 실체이고, 또한 경제와 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는 강력한 부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주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경영자가 하는 일로 되었다. 대부분 주주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회사재산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38] 주주의 변동은 회사에 사실상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회사는

38) Richard A. Musgrave, Peggy Boswell Musgrave, 邓子基译, 财政理论与实践, 2003, 389页.

독립된 인격이 있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동시에 의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편익 원칙(benefit priniciple). 정부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회사의 운영비용을 낮추어 주며 법인세는 회사가 이런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라고 여겨진다. 특히, 회사는 유한책임의 경영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회사제도의 가장 큰 가치이라고 할 수 있다.[39]

(3) 법인세는 일종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경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40]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 세제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제한하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어 징수하는 것, 전쟁과 같은 특수한 시기에 법인에 특수한 세금을 거두어 물가와 급여 수준을 조절하는 것 등등 모두 다 세금을 통하여 특정한 경제적 행위를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예로 될 수 있다.

(4) 법인세는 국가의 세수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가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라고 여겨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 결과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41]

2) 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은 통합적인 세제(溯源制, integration; 법인세와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이론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의 이론적 기초이다.[42] 이런 학설에 의하면, 법인이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

39) 胡文献, 古典制所得税与归集制所得税比较研究, 2015.1, 财会月刊, 45页.
40) 王曙光, 蔡德发, 对股息的经济性重复课税问题的讨论, 1995, 税务研究, 32页.

41) 王利明, 위의 논문, 20页.
42) 王永泉, 李伟, “刍议我国权流通时代上市公司股息红利双重征税问题”, 2013.10,

직형태에 대해 법률이 인격을 의제한 것이라고 본다.[43] 이런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에서 법인세의 존재가 불합리하다고 본다.

(1)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인격은 법의 의제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4] 따라서 자연인 외에는 독립적인 인격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법인은 여러 출자자가 영리나 그 밖의 목적에서 조성한 법적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존재는 주주나 출자자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그 때문에 법인은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주주 · 출자자로부터 독립된 권익이 없고 복지를 향유할 권리도 없다.

(2) 이들은 편익 원칙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회사가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여 수혜 받는 자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기타 형태의 조직도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편익 원칙에 의하면 모든 조직 형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지, 회사에 대하여만 세금을 징수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한책임의 권리를 놓고 말하더라도, 학자들은 회사가 유한책임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해서 꼭 이런 제도에 대하여 사회에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한책임이라는 권리로 인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45] 법인세가 유효한 정책적인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하여는 비록 회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방면에서 세제가 일정한 작용

中国证券期货, 64

4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76&cid=42131&categoryId=42131 (법률용어사전)

44) 李宜琛, 日耳曼法, 商务印书店, 2002, 29页.

45) Richard A. Musgrave, Peggy Boswell Musgrave, 邓子基译, 위의 책, 330页.

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 하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큰 범위에서 법인세로 조절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세수 혜택이나 우대정책을 들 수 있다.[46]

(3) 또한 법인실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법인은 주주에서 독립된 실재라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법인 그 자체의 소득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돈도 빼고 계산하여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법인의 소득이 언제나 영(0)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인세를 징수할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4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법인의제설의 주장과 같이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하지만 아래의 제4장에서도 논하게 되겠지만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바로 개인에게로 귀속시켜 과세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높아 질 뿐만 아니라 개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까지도 확보하여야 한다.[48]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소득이 발생한 법인 단계에서의 소득세를 인정하는 동시에 배당하는 회사 혹은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조정해주어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과세구조를 고안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아래 부분에서 이루어질 논의도 이런 법인의제설적 관점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제3절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

상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중과세가 나타나는 것이 “나

---

46) Richard A. Musgrave, Peggy Boswell Musgrave, 邓子基译, 위의 책, 391页.
47)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5, 515면.
48) 이창희, 위의 책, 518면. [Robert Couzin, Corporate Residence and Int'l Taxation(2002),16면]

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상 경제적 이중과세는 그 자체로서는 나쁜 현상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법인을 거쳐 버는 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게 과세되어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일 뿐이다.[49] 이 절에서는 "공평"과 "효율"의 관점에서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1. 공평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 공평의 함의

세부담이 납세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은 당연히 조세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 여겨진다. 조세공평의 원칙은 세제를 설계하고 실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영국의 고전 정치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세금에 관하여 제시한 네 가지 원칙 중에도 공평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바, "모든 국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재산이 국가의 보호 하에 향유하는 수익의 비례에 맞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0]고 하였다. 즉, 세수의 배분이 "로렌쯔 곡선"[51]으로 하여금 수입 분배의 균등선에 접근하게 하면 그 세수의 배분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공평은 보편적인 과세와 평등 또는 공평한 과세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자는 과세 관할권 내의 모든 법인과 자연인, 다시 말해서 모든 담세력이 있는 인은 모두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

49) 이창희, 위의 책, 515면.

50) Adam Smith, 郭大力译, 国民财富的性质和原因的研究, 商务印书馆, 2004. "제2장 세수부담에 대한 논의 부분" 참조.

51) 로렌쯔곡선은 소득이나 부와 같은 경제력의 소유에 대한 집중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해당 변량의 누적 분포량이 수직좌표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개인의 누적도수분포가 수평 좌표에 표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곡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야 함이 원칙임을 말한다. 후자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비율 혹은 액수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평한 과세는 또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측면을 포함하는바, 하나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으로서 담세력이 같은 사람은 동등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으로서 경제능력 혹은 담세력이 다른 인은 다른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2]

「그림 2」 조세평등 개념의 구조

상술한 여러 개념을 분석해 보면, 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공평한 세부담은 세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세금은 인의 천부적인 것과 인이 창조한 공헌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인의 노동과 그 창조물을 격려하여 인의 창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인에게는 적절한 보조와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53] 둘째, 세제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평등한 경쟁 환경과 균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미시적 관점에서의 시장에서 자가적으로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을 더 잘

52) Joel Slemrod & Jon Bakija, Taxing Ourselves - A Citizen's Guide to the Debate over Taxes (4th edition), 2008, p.57-70.

53) 张敏洁, 关于我国改善经济性重复征税问题的现状及展望——针对公司已分配股息及红利的理论分析, 经济研究, 2011, 32页.

발휘하게 해야 하며, 세수는 그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서 사회경제의 온정한 발전을 제공할 전체적인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공평은 절대적인 동일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기회상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소득의 결과상의 균형이 아니다.

2) 경제적 이중과세와 경영형태의 선택

현대의 회사는 출자자와 경영자의 특징에 의하여 개인기업, 조합기업, 회사형 기업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개인기업과 조합기업의 경우 대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단계를 꿰뚫어 바로 구성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전적인 세제는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과 개인기업이나 조합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 사이에 서로 다른 과세상 취급을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계 각국의 세제를 살펴보더라도 개인기업은 그 조직형식을 꿰뚫어 개인소득세만 징수하는 한편, 회사는 현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주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기업과 조합기업에서 회사제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불리한 기업조직형태를 취하는 셈이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회사의 성장과 회사제 기업형태의 확대를 일정하게 저해하게 된다.[54]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비록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많이 부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제 기업이 경제적 이중과세로 인하여 더 납부하는 부분의 세금은 상술한 비법인형태의 기업이 누진세율로 인하여 더 많이 지급하는 세금을 일정한 정도에서

54) 이창희, 위의 책, 515면.

상계하여 비법인형태의 기업과 회사제기업간에 부담하는 최종 세부담의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55]하지만 경제적 이중과세는 여전히 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효율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 효율의 함의

세제의 효율은 조세수입과 이를 걷는 데 드는 징세비용 간의 비교를 측정한다.[56] 또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과 경제의 운용에 이로운 영향이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1) 세무행정의 효율

세무행정 효율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효율, 즉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납세자와 정부부문이 사용한 징세비용(세제의 운용 비용과 징수 비용)을 가리킨다.[57] 여기에서 세무행정효율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징세비용의 크기이다. 이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실제로 세금을 징수할 때 드는 비용으로서,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용이한바, 그 구체적인 수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사전적인 준비 및 다른 보조적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있기에 계산해내기 어렵다.[58] 그리

55) 肖鹏, “所得税一体化研究”, 税务与经济, 2001年第2期, 26页.
56) 张守文, 위의 책, 25页.
57) 刘剑文, 위의 책, 177页.
58) 张守文, 위의 책, 24页.

하여 각국에서 세무행정 효율을 측정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징세비용이 전체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2) 세수의 자원배분 기능의 효율

세수의 자원배분 기능의 효율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효율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반대로 비과세 · 감면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서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준다. 세수의 자원배분 효율은 일반적으로 초과부담(Excess burden)에[59] 의하여 측정하는바, 이는 세금의 부과가 필연적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고 파레토의 법칙을[60] 파괴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수의 자원배분 효율은 필연적으로 초과부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61] 따라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세금으로 인한 생산이나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만 시장경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의 세금부과가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조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작용으로는 세금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거나, 리스크를 선호하지 않는 경제주체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장려한다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보호 등의 예를 들 수 있다.[62]

---

59) 초과부담은 조세부담액을 넘어서는 납세자의 후생감소분이다.

60) 파레토의 법칙은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으로서, 파레토가 유럽 제국의 상황을 조사해서 얻은 경험적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파레토 곡선의 기울기 α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degree of inequality)를 보이는 하나의 척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61) 刘剑文, 위의 책, 177页.

62) 王永泉, 李伟, 刍议我国权流通时代上市公司股息红利双重征税问题, 中国证券期货, 2013.10, 45页.

2) 경제적 이중과세와 생산요소의 투입

고전적인 소득세제는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세제를 살펴보면 노동력, 생산자료 등의 요소의 투입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전적인 세제 중에서 자본비용은 기업의 단계에서 비용의 형식으로 공제할 수도 없고 자본소유자의 단계에서도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생산성 요소가 모두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측면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하여 세금 전 수익률에 대한 요구를 높였고 많은 투자기회가 낭비되었다고 여겨진다.[63]

3) 경제적 이중과세와 융자방식의 선택

회사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크게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다. MM정리(Modigliani and Milter theorem)에[64] 의하면 세금의 영향이 없을 때 회사의 시장가치와 그 자본의 구조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현금배당한 부분은 공제될 수 없다면, 회사 측에서는 채권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주식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 비하여 회사의 가치창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65] 즉 현금배당 중 발생하는 경

63) 肖鵬, 위의 논문, 25页.
64) 1958년 미국경제학자 Modigliani와 Miller는 “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이상적인 시장에서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구조가 회사가치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였다.

제적 이중과세는 회사가 자금을 모으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에 차이를 낳고, 그 결과 나타난 서로 다른 현금흐름으로 인하여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 등 두 개의 자금조달 방식 간의 선택 왜곡이 발생한다.[66]

기업이 과도하게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것은 자금조달의 비용이 기업의 이윤보다 낮을 때라면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지렛대(leverage) 역할을 발휘하여 이점이 존재하지만 그 폐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선,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 미국은 여전히 고전적인 세제를 실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1970년 미국 회사의 평균부채와 고유자본의 비율은 50%였지만, 1980년과 1987년에 와서는 각각 76%와 66%로 상승하였다.[67] 이런 "부채경영"은 기업의 재무상의 리스크를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 사이의 채무상의 연계는 그 재무상의 관련성을 증가하여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일단 한 회사에 재무위기가 나타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의 금융체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회사의 이자지출의 부담이 커진다. 다른 한 통계에 의하면 1970년 미국의 이자의 지불금액은 전체 현금흐름의 21%를 차지하였는데, 1980년과 1988년에는 각각 28%와 35%로 높아졌다.[68] 이자 지급 비율의 증가는 회사를 놓고 말할 때, 필요한 한계경영수익의 수준을 높였으며 회사 소득의 과세표준을 줄여 국가의 재정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회사의 자본의 확충이 더 어려워졌다. 세부담을 덜기 위하여 회사는 자기자본보다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영을

---

65) 沈峰, 위의 논문, 18页.
66)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516면.
67) 付俊花, 위의 논문, 26页.
68) 付俊花, 위의 논문, 26页.

선호하였으며 투자자 역시 주식투자보다 채권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제공하는 부채융자는 많아졌지만 주식투자의 수요가 적어져 자본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69]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평과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이중과세는 세금의 중복으로 결과적으로 주주가 져야 하는 세부담을 커지게 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비회사 부문 사이에서 행하는 선택에서 왜곡이 나타나게 한다. 또 회사에서는 그 자금조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선택에서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70] 이런 선택상의 왜곡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악영향에 대처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3. 중국법상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상술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중국의 법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1) 개인기업,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선택 사이의 왜곡

중국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상장기업(최저

69) 王付军, “经济性重复课税研究”, 北方工业大学硕士论文, 2011年4月, 26页.

70)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에 대하여 논문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바, 이는 정확하지 않은 관점이다. 법인세율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이라는 세 가지의 관계가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든 하지 않든 차이가 없다.(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515면 각주 참조.)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에 대하여, 2005년에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왜곡과 상황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는지 여부와 그 비례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다.(杨宝, 股息税减半征收影响了公司分红决策吗 -财税〔2005〕102号文件的经验证据, 税务与经济, 2015.9)

25%)<조합기업(35%)<비상장기업(40%)의 순서이다.[71] 이는 투자자가 각 형태의 기업에 투자할 때 선택의 왜곡을 초래 하였으며 예컨대 동일한 양의 자금이라도 같은 값이라면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하였다.

종래 회사의 유한책임제도는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회사제 기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경제적 이중과세로 인한 보다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낮추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이중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개인기업으로의 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그만큼 저해하였다. 투자자가 투자의 대상으로 개인기업을 선택하고 회사제 기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업으로 하여금 그만큼 회사라는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충분하게 이용되지 못하게 하여 결국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시도한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규정은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비상장회사에 상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지만 중국의 상장회사 수는 유한하기 때문에[72] 결국 자원의 낭비와 효율 면의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이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발전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도 일종 효율상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다수 회사는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형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2) 융자방식에 대한 영향

71) 아래의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에도 세부담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72) 중국당국

중국의 현행 세법상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는 회사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어, 투자자가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 각종 형식의 차입금과 채권경영을 선호하게 한다. 분류소득세제를 실행하는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를 같은 유형으로 보아 모두 20%의 소득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하는 회사를 놓고 볼 때,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배당한 부분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 격이 된다. 하여 주주와 주식 채권소유자가 동일한 한계세율로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때, 회사는 채권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73]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배당소득과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상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한편 세금과 관련된 수평적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아래의 여러 장절을 통하여 논의하게 될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키워드의 하나로서, 이중과세는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한 세금징수 주체,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혹은 그 이상 과세하거나 과세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과세대상측면에서 생기는 이중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의 현금배당 중 경제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중복, 즉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

---

73) 钱晟, 卢凌波, “当前我国所得税制中的经济性重复课税问题探析”, 2002(9), 当代财经, 23页.

현금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가지 형태로서, 배당 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소득으로 인식되어 한 번 과세되고 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인식되어 또 한 번 과세된다. 현금배당에 대한 이런 과세구조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중과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에 직면하여 학계에서는 이중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법인세의 존재에 관한 당부를 다투게 되었다.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다툼 속에서 각자의 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인의제설의 주장과 같이 법인 단계에서 꼭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우선 이르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법인세를 물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세무행정비용의 증가 등 문제로 말미암아 소득이 발생한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 단계에서 미리 걷음으로 인하여, 배당하는 회사 단계에서 걷는 세금과 배당 받는 주주에게 걷는 세금의 중복을 일정하게 조정해주어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과세구조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또한 생기게 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공평과 효율의 관점에서 경제적 이중과세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평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조세정책은 그 자체를 통하여 세금징수에 관련된 주체에게 똑같은 기회가 아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편 효율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조세정책은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는 투자자가 투자의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회사가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융자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모두 왜곡이 나타날 여지를 만든다. 아래의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현행세법상의 관점

에서도 상술한 영향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절실한 것으로 되었다.

제3장 중국 현행법상 배당의 과세구조 및 이중과세조정

이 장에서는 우선 중국 현행 세법 중에서 현금배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 징수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겠다.

제1절 중국법상 배당의 과세구조

배당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회사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74]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의 소득 혹은 배당 시점까지 누적된 이익 전부 혹은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배당하고 배당을 받는 두 개 단계 및 배당하는 회사와 배당받는 주주로서의 회사 및 개인 등 세 개의 주체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이익 배당과정에서 과세하는 두 개의 단계와 그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별에 따라 중국법상 배당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과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이익을 배당하는 회사의 단계에서

중국「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중국 현행세법상, 기업 설립의 준거법과 중국 국경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의 설치여부에 의하여 기업을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나눈다.[75]

---

74) 제2장 현금배당 기본이론부분 참조.
75) 중국「기업소득세법」제2조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분류된다. (...)

1) 거주자 기업(居民企業)

거주자 기업은 중국의 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76] 설립되었거나 [중국의 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되는 수도 있나요?][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법률상의 표현을 따왔습니다. 아마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을 감안하고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중국 대륙이라는 뜻으로...]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중국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은 중국 법률 또는 행정 법규에 의하여 설립된 여러 형태의 조직을 가리킨다.[77] 따라서 중국 내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기업에서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취하는 형태인 외상투자기업 역시도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거주자 기업에 속한다.

이런 거주자 기업은 중국 국내, 국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25%의 기업소득세 기본세율[78]을 적용 받는다.[79]

2) 비거주자 기업(非居民企業)

---

76) 중국 국내라 함은 중국대륙을 의미하며,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등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7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 규정한 법률에 의거 중국 국내에서 설립한 기업에는, 중국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중국「기업소득세법」 제2조에 규정한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에는, 외국(지역)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78) 25%의 기본세율 외에, 혜택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도 있는바, 소형저이윤기업은 20%의 혜택세율을 적용받고 첨단고신기술산업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런 세율을 적용 받은 기업은 소수인바,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전제로 한다.

79) 중국「기업소득세법」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비거주자 기업은 외국 혹은 국외 지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국내에 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국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중국 국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중국 국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그가 취득한 국내원천소득이나, 중국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지점이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모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80]

하지만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혹은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지점이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세율상에서 우대를 받아 혜택세율 10%를 적용한다.[81] 물론 이 경우 비거주자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80) 중국「기업소득세법」제3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반드시 중국 국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1)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제91조: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하는 경우, 1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기업소득세법」제27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5) 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
동법 제3조 제3항: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반드시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소득	세율
거주자 기업		중국 국내, 외 원천소득	25%
비거주자 기업	기구 설립	중국 국내, 외 원천소득	
	①기구 설립안함. ②기구 설립, 단 소득이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음.	중국 국내 원천소득	10%

「표 3」 중국 현행법상 기업소득세 납세주체와 그 적용세율

상술한 기업소득세의 납세자는 우선 기업이 매 과세연도에서의 상품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분배)등 권익성 투자소득[82],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및 증여받은 소득과 기타소득의 총합을 그 소득 총액으로 한다.[83] 또한 기업은 그 수입 총액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관계되는 합리적인 지출로서의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각종 공제 및 보전이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기업소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 혹은 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84]

또한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그 고정사업장과 취득한 소득이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 및 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그 수입 총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

82) 권익성 투자소득은 투자자가 주권투자를 시작하여서부터 투자받은 자로부터 받은 화폐 혹은 다른 형식을 얻은 수입을 말한다.

83)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제6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한 소득에는 상품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분배)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및 수증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84) 중국「기업소득세법 제10조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아래에 열거하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불한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였다.[85]

2.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1)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금배당을 받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그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일반배당과 특별배당소득 모두 포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86], 전술한 절차와 같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87]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분배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과세를 한번 하고, 회사주주에게 배당한 후, 회사주주의 측면에서 한 번 더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회사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할 때에 경제적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2) 주주가 개인인 경우

중국「개인소득세법」의 현행법상 납세자를, 중국 국내에 주소(住所)[88]가 있는지 여부와 중국 국내에 거소(居所)[89]가 있는지 여부

---

85) 중국「기업소득세법」제19조 비거주자 기업이 본 방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에 다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배당 및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은, 그 수입총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2) 자산양도수입은 그 수입총액에서 당해자산의 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3) 기타의 수입은 상기 (1), (2)항에 규정된 방법을 참고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6) 중국「기업소득세법」제6조 기업이화폐형식과 비화폐 형식으로 각종 원천소득에서 취득한 수입을 수입총액으로 하는바,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판매수입 (2) 용역공급수입 (3) 자산양도수입 (4)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수입 (7) 특허권사용료수입 (8) 수증수입 (9) 기타수입

87) 비거주자기업 중에서 국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외국세액납부공제제도를 적용하기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이다. 거주자는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원천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개인소득세법」 예외조항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은 중국 국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 중국 국내의 소득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90]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없으면서 국내에 1년 이하 거주한 개인, 혹은 1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한 개의 납세연도 내에 국내에 있지 않은 시간이 30일 이상이 되었거나 여러분 국내에 있지 않은 기한이 누적하여 90일 이상인 개인은 비주민 납세자이다.[91] 비주민 납세자도 역시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만 소득세를 납부한다.[92](표 4 참조)

---

88)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에 의하면 주소(住所)는 공민은 그 호구(户籍)가 소재한 곳의 거주지를 주로로 할 수 있다. 항시 거주지와 주소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항시 거주지를 주소로 한다.

89) 거소(居所, residence)는 자연인의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90) 중국「개인소득세법」 제1조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91) 중국「개인소득세법」 제1조 (...)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92) 刘剑文, 위의 책, 254页.

<table>
<tr><td colspan="5" rowspan="3"></td><td colspan="4">과세소득의 범위</td></tr>
<tr><td colspan="2">중국국내 소득</td><td colspan="2">중국국외 소득</td></tr>
<tr><td>국내 원천</td><td>국외 원천</td><td>국내 원천</td><td>국외 원천</td></tr>
<tr><td rowspan="9">납세자</td><td rowspan="3">거주자</td><td rowspan="2">기본 원칙</td><td colspan="2">no주소, no거소</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면세</td></tr>
<tr><td colspan="2">no주소, 1년 이하 거주</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면세</td></tr>
<tr><td>우대</td><td colspan="2">no주소, 연속 혹은 누적하여 거주한 시간이 90일 혹은 183일</td><td>과세</td><td>면세</td><td colspan="2">면세</td></tr>
<tr><td rowspan="6">비거주자</td><td rowspan="2">기본 원칙</td><td colspan="2">주소</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과세</td></tr>
<tr><td colspan="2">no주소 1년 이상 거주</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과세</td></tr>
<tr><td rowspan="4">우대</td><td colspan="2">no주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td><td colspan="2">과세</td><td>과세</td><td>면세</td></tr>
<tr><td rowspan="3">5년 이상 거주, 6년째부터</td><td>매년 거주 만 1년</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과세</td></tr>
<tr><td>매년 거주 1년 이하</td><td colspan="2">과세</td><td colspan="2">면세</td></tr>
<tr><td>90일 or 183일 이하</td><td>과세</td><td>면세</td><td colspan="2">면세</td></tr>
</table>

「표 4」 개인소득세 납세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전술한 부분에서는 중국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납세자의 소득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분류소득세제(分項稅制)를 실시한다. 즉, 개인의 소득을 11개의 항목[93]으로 나누어, 소득을 각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매개 항목의 과세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납세한다. 그 중에서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인 20%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이자 및 배당에서 얻은 소득은 매회 지급받는 수익금액의 전부를 과세소득금액으로 하며 아무런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94]

93)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11개 항목으로는: ① 임금, 급여소득,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③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④ 노무보수소득 ⑤ 원고료소득 ⑥ 특허권사용료소득 ⑦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 ⑧재산임대소득 ⑨ 재산양도소득 ⑩ 우연(우발)소득 ⑪ 국무원 재정주관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소득

94) 중국「개인소득세법」제6조 ⑥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중국 현행 세법상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의 소득은 회사의 측면에서 소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세금 후의 소득을 개인주주에게 배당 한 후, 개인주주는 또 법에 따라 다시 한 번 주주의 측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3. 유보이익에 대한 잠재적 과세중복

만약 기업이 세후 이익에 대하여 분배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보이익에 의하여 형성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 「기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회사에 투자했다면, 발생한 자산평가 순증가가치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지만, 투자도중 혹은 투자기간이 만료한 후에 출자했던 실물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회수할 때 발생한 재산권 양도의 순수익 혹은 순손실은 과세소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에 의하여 기업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95] 즉 만약 회사 측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출자했던 자산을 양도하거나 회수하였을 때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순수익 중 포함된 그 전 년도의 유보이익(회사의 측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함)은 다시 한 번 과세소득에 포함되게 되어 법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을 놓고 말할 때, 중국법상 주식 양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96]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취득

95) 马杰, “我国股息经济性重复课税的法律规制研究”, 华东政法大学法学硕士论文, 2011年, 4页.

96) 1998년「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데 관한 통지」에 의하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한 자본이득, 즉 기타 출자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자산양도소득 항목 하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개인투자자를 놓고 말할 때, 만약 유보이익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의 상장으로 실현된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출자자산의 양도 등 기타 형식으로 자본이득이 생기게 되면 여전히 자산양도소득이 생겨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있다.중국의 소득세제의 광범위한 정의 중의 소득은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유보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이중과세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97]

제2절 중국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연혁

전술했듯이, 중국법상 현금배당 중 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회사의 측면에서 기업소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그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주주의 측면에서 또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한 번 더 납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어, 경제적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에서는 2005년의 재무부규정, 2008년의 「기업소득세법」, 2012년의 개인소득세 차별화대우정책에 의하여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1. 2005년 이전

2005년 이전, 중국당국에서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아무런 조정도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세법 체계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법이 실행되고 있었지만,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하여 통일된 법인세법이 없이, 중국「외상투

97) 马杰, 위의 논문, 4页.

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기업소득세법 잠행조례(暫行條例)」를 따로 정하여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중 개인의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20%였고[98]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세율은 33%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배당에 대하여 종래부터 고전적인 세제를 적용하여 왔다.

한편 '개인기업'(원래 의미의 개인기업 외에 조합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국무원에서 공포한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줄곧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신 투자자의 사업소득은 개인공상업자(个体工商戶)[99]의 생산경영소득에 준하여 5-35%의[100] 누진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 개인기업(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세율: 5-35%
• 법인세법 세율: 33%
•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 20%

「표 5」2005년 이전 각 소득에 대한 세율

이런 규정 하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기업의 형식을 선택할 때 그 세부담을 살펴보면 기업의 측면에서 100단위의 소득을 얻었을 때 개인기업의 35%의 실제 세부담에 비하여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실제 세부담이 1.5배이나 높은 46.4%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자연히 세부담을 적게 부담하고 소득을

98)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법이 시행하여서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줄곧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였다.

99) 개인공상업자는, 경영능력이 있는 공민이 「개인공상업자조례」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와 등기를 거쳐, 공상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개인공업자는 공상업 경영에 참여하는 자연인 혹은 가족일 수 있다.

100)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행된 개인소득세법은 비록 그 기산점은 달랐지만,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세율은 줄곧 5-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보다 발전된 회사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하게 억제된다.

		개인기업	회사	
법인단계	회사의 소득	100	100	
	최고세율	35%[101]	33%	
	납부세액	35	33	
	배당소득	-	67	
주주단계			개인주주	법인주주
	과세소득	-	67	67
	세율	-	20%	25%
	납부세액	-	13.4	16.75
	총 세액	35	46.4	49.75
	실제 세부담	35%	**46.40%**	**49.75%**

「표 6」2005년 이전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다음으로 회사제 기업이 융자방식을 선택할 때, 은행이나 기타 회사에서 대출하는 부채형식과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증자하는 자본의 형식에서의 선택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00단위의 자금을 모을 때, 부채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융자한 자금은 이자비용으로서 회사의 단계에서 모두 공제하게 될 수 있어 그 세부담이 바로 투자자에게 인가되어 20%의 세부담만 부담하면 되지만, 자본의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적 이중과세로 인하여 최종으로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실제 세부담은 역시나 46.6%(법인주주는 49.75%)로 되어 역시 선택 상에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추세는 위의 절에서 서술했듯이 기업의 파산위험을 늘리며, 이자의 지출부담이 커지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101) 비록 개인기업은 그 세율상에서 개인공상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에 준하여 5-35%의 누진세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선은 기업이 소득을 충분히 취득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기에 35%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자본		부채	
자금	100		100-100=0[102]	
최고세율	33%		-	-
납부세액	33		-	-
배당소득	67		-	-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채권자	법인채권자
과세소득	67	67	100	100
세율	20%	25%	20%	33%
납부세액	13.4	16.75	20	33
총 세액	46.4	49.75	20	33
실제 세부담	46.40%	49.75%	20%	33%

「표 7」2005년 이전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국당국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가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였고, 2005년부터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 2005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2005년 6월 13일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배당, 특별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를 통하여, 개인투자자가 상장기업에서 취득한 배당, 특별배당은 잠정적으로 50%만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당시 2004년 1월에 발표한 「국무원에서 자본시장개혁의 개방과 안정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국가[2004]3호 문서)[103]과 맞물리는 규정이었는바, 개인

102) 이자로 받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는 이자비용을 공제해 주어 과세소득이 0으로 된다.

103) 국가[2004]3호문서의 주요내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의의를 충분히 인지한 기초 상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국의 실정에 맞게 중국의 특색이 있게 발전시키는 방식과 그 기본절차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자본주의시장의 개혁개방과 안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임무는: 직접적인 융자를 늘이고 현대화한 시장체계를 건립하며 더 큰 정도에서 시장이 자원분배중의 기초적 작용을 목표로 투명

이 배당받은 현금에서 50%만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 이중과세를 일정하게 완화하였다. 이런 방식은 아래의 장에서 논의하게 될 배당공제방식에 속한다. 아래의 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배당공제방식이란 이중과세조정방식의 하나로서 주주가 취득한 배당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또한 [2005]102호 문서의 규정은 중국의 고전적인 소득세제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었다.[104]

• 개인기업(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세율: 5-35% • 법인세법 세율: 33% •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 20% - 개인은 상장회사에서 배당 받은 소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105]

「표 8」2005-2008년 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이런 규정을 토대로 위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때 법인과 비법인 부문 사이에서의 선택과, 자금 조달의 방법을 정할 때 자본형식 혹은 부채형식 사이에서의 선택에서 당시 상장회사의 개인주주의 세부담이 39.7%로 낮아져 그 세부담의 차이가 상장회사의 개인주주의 범위에서는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상장회사의 개인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역시나 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변화하지 않았고, 세부담이 일정하게 완화되었다고 보는 상장회사의 개인주주의 세부담을 놓고 보더라도 법인과 비법인 부문 사이의 선택에서 법인에 투자함으로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이 비법인 부문에 투자하면 부담하는 세부담보다 5%정도 낮게 되어 왜

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합리하고 기능이 완벽한 자본시장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4) 昝星源, “我国股息经济性重复征税研究-给予股息个人所得税新规的再思考”, 厦门大学法学硕士论文, 2014.5, 7页.

105) 실제로 세율이 10%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곡이 나타났으며 자본이나 부채 사이의 선택에서도 여전히 세부담이 맞추어지지 않아,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에서는 상장회사에 한하여만 배당소득의 50%를 과세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개인기업, 비상장기업, 상장기업이라는 삼자간의 법인형식의 선택에서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상장화사와 비상장회사에서 각각 부채형식과 자본형식을 선택하는 면에서 왜곡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가 공포된 이 후에는 줄곧 이런 문제를 안고 가게 되었다. 특히나 중국기업을 살펴보면 회사제 기업 중에 비상장기업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여 그 왜곡에 의한 악영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개인기업	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법인단계	회사의 소득	100	100		100	
	최고세율	35%	33%		33%	
	납부세액	35	33		33	
	배당소득	-	67		67	
주주단계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과세소득	-	33.5	67	67	67
	세율	-	20%	25%	20%	25%
	납부세액	-	6.7	16.75	13.4	16.75
	총 세액	35	39.7	49.75	46.4	49.75
	실제 세부담	35.00%	**39.70%**	**49.75%**	**46.40%**	**49.75%**

「표 9」 2005-2008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자본				부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자금	100		100		100-100=0	
최고세율	33%		33%		-	-
납부세액	33		33		-	-
배당소득	67		67		-	-
	개인 주주	법인 주주	개인 주주	법인 주주	개인 채권자	법인 채권자
과세소득	33.5	67	67	67	100	100
세율	20%	25%	20%	25%	20%	33%
납부세액	6.7	16.75	13.4	16.75	20	33
총 세액	39.7	49.75	46.4	49.75	20	33
실제 세부담	**39.70%**	**49.75%**	**46.40%**	**49.75%**	20%	33%

「표 10」2005-2008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3. 2008년부터 2012년 이전까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국「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2008년 이전에 중국회사와 외국회사를 분간하여 규제하던 방식을 청산하고, 통일된 중국「기업소득세법」으로 중국 국내의 모든 유형의 회사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2008년 중국「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 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었다. 그 결과 전면적으로 중국 국내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세 세부담을 낮추어 주었다.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면에 있어서, 「기업소득세법」은 국내원천 소득,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 기업(이하 '적격 거주자 기업'이라 부르도록 한다)이 기타 거주자 기업에 투자하고 얻은 투자수익, 중국 국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얻은,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배당 및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면세소득으

로 규정하였다. 단,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106]에서는 이런 권익성 투자수익을 투자자가 공개발행하고 상장하여 유통 중인 주식을 연속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받은 투자수익으로 제한하였다.[107] 뜻인즉, 비록 거주자 기업 사이의 배당이더라도 배당 받은 기업투자자가 배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12개월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 것이었다.[108]

• 개인기업(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세율: 5-35%
• 법인세법 세율: 25%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 기업 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
•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 20%
- 개인은 상장회사에서 배당 받은 소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킴

「표 11」2008-2012년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마찬가지로 법인과 비법인 부문에로의 투자를 선택할 때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2008년에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낮추었고 개인이 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50%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개인이 상장회사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 세부담은 32.5%로 개인기업에 투자하였을 때의 세부담 35%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게 맞추어졌다. 「기업소득세법」에서 적격 거주자 기업 사이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106) 실시조례는 한국법상 "시행령"에 해당한다.

107)「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제83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2)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간의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이란, 거주자 기업이 기타 거주자기업에 투자하고 취득하는 투자수익을 가리킨다. 동법 제(2)와 제(3)에 규정한 배당, 분배소득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하여 유통 중인 주식을 보유하고 연속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권익성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108) 이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세회피방지조항에 속한다.

중과세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109]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회사의 주식을 1년 소유하고 있어야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을 면제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세부담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자본형식과 부채형식으로 선택하는 에서도 부채형식을 선택하면 여전히 20%의 세부담을 지지만 자본형식을 선택하면 상장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32.5%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40%로 되어 여전히 선택 상에서 왜곡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때로부터 상술한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한다는 규정이 이중과세의 조정을 저애하기 시작하였다.

109) 법인주주가 주식을 충분히 긴 시간 소유하고 있는다고 전제한다.

		개인기업	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법인단계	회사의 소득	100	100			100		
	최고세율	35%	25%			25%		
	납부세액	35	25			25		
	배당소득	-	75			75		
주주단계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1년 이상	1년 이하		1년 이상	1년 이하
	과세소득	-	37.5	75	75	75	75	75
	세율	-	20%	0%	25%	20%	0%	25%
	납부세액	-	7.5	0	18.75	15	0	18.75
	총 세액	35	32.5	25	43.75	40	25	43.75
	실제 세부담	35.00%	**32.50%**	**25.00%**	43.75%	**40.00%**	**25.00%**	43.75%

「표 12」2008-2012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회사						이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회사의 소득	100			100			100-100=0	
최고세율	25%			25%			-	-
납부세액	25			25			-	-
배당소득	75			75			-	-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채권자	법인채권자
		1년 이상	1년 이하		1년 이상	1년 이하		
과세소득	37.5	75	75	75	75	75	100	100
세율	20%	0%	25%	20%	0%	25%	20%	25%
납부세액	7.5	0	18.75	15	0	18.75	20	25
총 세액	32.5	25	43.75	40	25	43.75	20	25
실제 세부담	**32.50%**	**25.00%**	43.75%	**40.00%**	**25.00%**	43.75%	20.00%	25.00%

「표 13」2008-12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4. 2012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

2012년 「상장회사 배당소득 차별화 개인소득세정책을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이하 재정세수[2012]85호 문서)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주주에게도 기업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였다. 즉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미만(1개월 포함)인 경우 배당과 특별배당에서 얻은 소득 전부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포함)인 경우 배당과 특별배당에서 얻은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그 실제 세율이 10%로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25%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결국 개인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일부 감면받게 된다. 이런 정책을 '차별화 개인소득세정책'이라고 한다. 이 방식 또한 배당공제 방식에 속한다.

• 개인기업(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세율: 5-35% • 법인세법 세율: 25% - 적격한 거주자 기업 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 •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 20% - 배당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였다면 배당소득의 25%를 과세소득세 포함; 1개월 이상 1년 이하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의 50%를 과세소득에 포함; 1개월 이하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 전부를 과세소득에 포함

「표 14」2012-2015년까지 각 소득에 대한 세율

이 제도에서 주식소유의 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처분한 날까지의 일수를 세어 계산하는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였다는 것은 전해 모월 모일부터 이번 해 동월 동일의 전날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지분수량은 매일 결산 후, 개인투자자

의 증권계좌의 소유기록을 기준으로 한다.[110] 개인이 여러 번에 거쳐 거래를 했을 경우 "선입선출법(先進先出法)"[111]을 적용하여 계좌기록상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장회사에서 현금을 배당할 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상장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당시, 개인주주가 주식을 소유한 시간이 주권의 명의개서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를 막론하고, 상장회사에서는 배당소득의 25%를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예를 들어, 갑이 2014년 5월 24일에 상장회사 A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A회사에서 2013년도에 매 10주당 배당을 4원 했고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4년 6월 18일이라고 한다면, 상술한 계산방식에 따라, 갑의 개인소득세를 잠시 200원(10000주/10주*4원*25%=1000원, 1000*20%=200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다음,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의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 없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등기결산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기한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증권회사 등에 개설된 개인의 자금계좌에서 세금을 '증권등기결산회사'

110) 예를 들어, 갑이 2014년 1월 8일에 H상장회사의 A주식을 매수하였다. 만약 갑이 2014년 2월 8일에 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갑이 주식을 소유한 기간은 1개월이고; 2014년 2월 9일부터 2015년 1월 8일 사이에 양도한다면 갑이 주식을 소유한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며; 2015년 1월 9일 및 그 후에 양도한다면 갑이 주식을 소유한 기간은 1년 이상이 된다.

111) 예를 들어, 을이 각각 2013년 5월 15일에 H상장회사의 주식을 8000주, 2014년 4월 3일일에 2000주, 2014년 6월 6일에 5000주 매수하고 2014년 6월 11일에 13000주를 양도하였다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차례로 2013년 5월 15일에 매수한 주식 8000주, 2014년 4월 3일에 매수한 주식 2000주, 2013년 6월 6일에 매수한 주식 3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8000주는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2000주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50% 공제할 수 있으며, 3000주는 1개월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기에 개인소득세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로 이전시켜주며, 증권등기결산회사는 다음 달의 5개 영업일내에 상장회사에 이전한 후, 상장회사에서 다시 그 세금을 법정신고절차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 하여야 한다. 즉 갑이 2014년 6월 24일 전에 A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했을 때, 주식소유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600원(10000주/10주*4원*20%-200원=600원)이다. 만약 갑이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5월 24일 사이에 주식의 전부를 양도했다면 주식소유기간이 1개월부터 1년 사이로서 세금 200원(10000주/10주*4원*50%*20-200=2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개인기업	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법인단계	회사의 소득	100	100					100		
	최고세율	35%	25%					25%		
	납부세액	35	25					25		
	배당소득	-	75					75		
주주단계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1년	1월-1년	1월	1년	1년		1년	1년
	과세소득	-	18.75	37.5	75	75	75	75	75	75
	세율	-	20%	20%	20%	0%	25%	20%	0%	25%
	납부세액	-	3.75	7.5	15	0	18.75	15	0	18.75
	총 세액	35	28.75	32.5	40	25	43.75	40	25	43.75
	실제 세부담	35.00%	**28.75%**	32.50%	40.00%	**25.00%**	43.75%	**40.00%**	**25.00%**	43.75%

「표 15」 2012-2015년까지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선택에서의 세부담

	자본(배당)								부채(이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회사의 소득	100					100			100-100=0	
최고세율	25%					25%			-	-
납부세액	25					25			-	-
배당소득	75					75			-	-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채권자	법인채권자
	1년	1월-1년	1월	1년	1년		1년	1년	100	100
과세소득	18.75	37.5	75	75	75	75	75	75	20%	33%
세율	20%	20%	20%	0%	25%	20%	0%	25%	20	33
납부세액	3.75	7.5	15	0	18.75	15	0	18.75	20	33
총 세액	28.75	32.5	40	25	43.75	40	25	43.75	20%	33%
실제 세부담	**28.75%**	32.50%	40.00%	**25.00%**	43.75%	**40.00%**	**25.00%**	43.75%	20.00%	25.00%

「표 16」 2012-2015년까지 자금 조달과정 중 부채와 자본 사이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차이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인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소득세의 실제세율은 5%로 되고 개인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세부담은 28.75%이다. 동시에 개인주주가 주식을 1개월부터 1년 이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정세수 [2005]102호 문서에서의 규정과 같이 실제세율이 10%로 되며 실제 세부담이 32.5%로 된다.

5. 2015년 이후

2015년에는 재정세수[2015]101호 문서를 제정하여 재정세수[2012]85문서에서의 차별화대우의 세율을 조정하여 1년 이상 소유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전부 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게 하여,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은 면세되게 되었다.

• 개인기업(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세율: 5-35% • 법인세법 세율: 25% - 적격한 거주자 기업 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 •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 20% - 배당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였다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 1개월 이상 1년 이하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의 50%를 과세소득에 포함; 1개월 이하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 전부를 과세소득에 포함

「표 17」 2015년 이후 각 소득에 대한 세율

재정세수[2015]101호 문서의 규정은 개인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을 때,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상황에서는 주주 단계에서의 소득세 부담이 없어지므로 경제적 이중과세를 아예 제거하는 효과까지 이

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기업에 투자하였을 때의 세부담은 역시 35%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투자주식의 선택 과정에서 왜곡이 나타날 수 있었다.

6. 중국 현행법상 이중과세 조정

위의 절에서 서술한 여러 시기의 조정 제도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중국 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주자 기업 사이의 배당만 말한다. 외국 원천의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조정 제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	법인주주	1년 이상	25%/0%	
		1년 이하	25%/25%	
	개인주주	1년 이상	25%/0%	25%/20%
		1개월-1년	25%/10%	
		1개월 이하	25%/20%	

「표 18」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 과세구조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대체적인 방식은 이중과세조정방식의 하나로서 주주가 취득한 배당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배당공제방식이다. 하지만 위의 절에서 서술한 중국의 각 단계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적격 기업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지만, 개인이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그 조정이 상장회사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는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로부터 나타난 문제이다.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의 규정의 실시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그 목적은 사회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고, 근본적으로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하여, 당시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열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상장회사에만 제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장회사의 범위 역시 중국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 제한하였다. 이런 규정은 비록 그 효과상에서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08년에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낮춘 후, 그 실제 세부담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과 맞추어 졌지만, 적격한 법인주주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개인기업,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이 세 가지 투자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왜곡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제한적인 조정은 재정세수[2012]85호 문서의 규정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역시 재정세수[2012]85호 문서 규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아도, 2010년에 들어선 후, 중국의 주식시장은 "전유통시대(全流通時代)"에[112] 들어섰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투기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차별화 개인소득세정책"을 실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지분소유기간을 늘려보고 투기행위를 줄여보고자 하는 데 이 규제의 근본목적이 있었고, 이런 정책의 실시는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를 감소시켰던 것이다.[원래 정책 목적은 따로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중과세 감소의 결과도 가져왔다는 뜻인가요?][정책의 주된 목적은 상술한 개인투자자의 지분소유기간을 늘이고 투기행위를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112) 종래 중국에서는 주식시장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식의 유형은 국외의 주식유형과 다르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유통주식 및 유통되지 않는 주식으로 나뉘어 유통주식은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비유통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근래 중국에서는 이 두개 유형의 주식에서 비유통주식도 모두 유통하게 함으로써 주식의 전유통시대가 도래하였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에 관한 과세구조를 살펴보았다. 현금배당에는 배당하는 회사, 배당 받는 기업투자자 혹은 개인투자자 등 세 개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과세문제에 적용되는 규정은 주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소득세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고전적인 세제에 속한다. 배당하는 회사는 그 소득에 대하여 우선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한 후, 투자자는 그러한 배당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개인소득세법」에는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하거나 배당 받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 현행세법상 현금배당 중에는 틀림없이 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중국법상에서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배당받는 개인의 측면에서만 조정을 진행하여 주다가 그 다음으로는 적격 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었다. 그 후 현재에는 적격 법인사이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주주의 측면에서는 그가 주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현재 회사에서 배당받는 주주 중 법인주주가 받은 적격한 배당에 대하여는 이중과세가 제거된 상태이고 상장회사의 개인주주에 대하여도 당해 회사의 주식을 1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1년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

거나 비상장회사의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은 여전히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4장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유형

이 장에서는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여 본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음, 이런 방법들이 현 시점에는 각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추세를 알아본다.

제1절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식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현재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병존하여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비록 아직도 소수의 국가에서는 고전적인 세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여(Integrate)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과 전체단계에서의 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조합과세방식(partnership Approach)

조합과세방식은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를 공동사업의 조합원으로 보고, 법인유보이익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본다. 그리하여 법인의 총 소득을 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킨 후 출자자의 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113)]

113) 안희재, “법인-주주간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EU의 변화와 역외투자부문을 중

조합과세방식의 장점은 우선 ① 법인단계에서는 혹시 세금을 걷더라도 주주단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만을 하는 것이고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으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②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각 소득사이의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개인소득세로서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 ③ 법인소득 중 배당분뿐만 아니라 유보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당이 촉진되어 사내유보를 촉진하는 현행세제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다.[114]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인세를 없애는 것이므로 정부의 측면에서는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115] 동시에 만약 회사의 자본구조가 복잡하고 주주의 수가 많으며 주식거래가 빈번할 때, 법인의 소득을 어느 출자자에게 얼마나 귀속시킬지 확정하기 힘들게 되어 행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1966년 캐나다의 Carter Commission, 1977년 미국의 재무부 및 1983년 호주의 Campbell Committee가 이 제도를 선호하였다고 한다.[116] 그들은 이런 방식 하에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현상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이른바 'S유형의 회사(S corporation)[117] 외에는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118]

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2면.

114) 付俊花, "所得税中的股息经济性重复课税问题研究", 2008, 山东大学硕士论文, 31页.

115) 吴星泰, "论所得税两税合一的法理基础与制度创新", 中南大学硕士论文, 2011.5, 30页.

116) 付俊花, 위의 논문, 32页.

117) S법인은 그 자체로서는 납세주체가 아니고 그 소득, 손실을 직접 주주에게 귀속시킨다. S법인의 경우 회사의 소득과 비용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오직 법에서 규정한 소형 기업만이 S유형의 법인으로서 납세할 수 있다.

조합과세방식과 같은 완전한 통합방식(full integration), 즉 법인을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을 바로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은 그 구조상, 소득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세금을 한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배당 중 경제적 과세중복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여전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상적이기는 하나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119]

상술한 문제에 대비하여 소득이 발생한 법인 단계에서의 소득세, 곧 법인세를 인정하는 동시에 배당하는 회사 혹은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에서 이중과세 부담을 일정하게 조정해 주어 배당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구조가 고안되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 아래에는 이런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각각 회사의 측면에서, 또는 배당받는 주주의 측면에서 각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의 조정방법

1)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Dividend-paid deduction method)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은 배당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소득 중 배당분은 법인이 과세소득을 산정할 당시 손금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다.[120] 이런 방식에서는 배당을 비용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방식은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는 과정 중의 왜곡을 없애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21] 즉 회사로 하여금 과세소득 중에서 이미 배당한 부

118) Cheryl D. Block, Examples & Explanations: Corporate Taxation, 4th Edition, 2009, P.26-32.
119) 안희재, 위의 논문, 14면.
120) 안희재, 위의 논문, 14면.

분을 공제하게 함으로써 이자와 마찬가지로, 공제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은 사실상 배당하는 회사 단계에서의 소득 과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인바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처리방법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별다른 제도의 고안이 없이 배당지급액을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함으로써 간편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고,[122] ② 특히 배당을 100% 손금산입 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③ 배당과 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선택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것이다.

하지만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은 국제적으로 다수 국가의 선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외국회사나 비거주자인 주주는 법인 소재지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의 재정수입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다른 국가에 양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123] ② 회사로 하여금 유보이익을 감소하는 것을 선호하게 하여 회사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또한 추후에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배당금을 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는 이런 방식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배당한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확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재정처리의 흐름에 맞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124]

---

121) 吴星泰, 위의 논문, 31页.
122) 안희재, 위의 논문, 15면.
123) 马杰, “我国股息经济性重复课税的法律规制研究”, 2009, 华东政法大学硕士论文, 12页.
124) 魏志梅, “企业所得税与个人所得税一体化的国际比较与借鉴”, 2006.9, 税务研究, 73页.

2) 차등세율방식(Split-rate method)

차등세율방식은 법인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하여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배당분에 대하여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125] 그 목적은 회사로 하여금 분배이익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유보이익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려는 데 있다.

차등세율방식은 회사의 배당이익과 유보이익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중복현상을 완화하는 데 그 장점이 있다.[126] 하지만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① 배당이익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당을 격려하는 격이 되어 회사의 자체보유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또한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한 유보소득이 추후 개인에게 배당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한 중복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높은 법인소득세율과 낮은 법인소득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소득세 상당액을 주주 또는 법인에게 환급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결국 후술할 배당세액 공제방식(imputation) 으로 이어지게 된다.[127] 이외에 또 ③ 배당이익과 유보이익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두 가지 세율 사이의 차이가 작다면, 그 효과상에서 고전적인 세제에 가까워 질 수 있고,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분배하여 회사에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128] 독일과 일본에서 이런 방식을 취했었지만, 그동안의 소득세제

125) 안희재, 위의 논문, 15면.
126) 付俊花, 위의 논문, 29页.
127) 안희재, 위의 논문, 16면.
128) 马杰, 위의 논문, 13页.

개혁을 거쳐 독일에서는 배당공제방식, 일본에서 다시 고전적인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129]

3. 배당받는 주주 측면에서의 조정방법

1) 배당세액 공제방식(Imputation)

임퓨테이션은 배당받은 주주가 기업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개인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임퓨테이션은 주주가 기업소득세 세부담의 최종적인 부담자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주주가 납부할 소득세의 예납절차라고 여기고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귀속시켰다.[130] 즉 투자자가 받은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임퓨테이션 방식은 법인의 소득 중 배당이 이루어질 당시에 주주의 배당소득세 산정 시점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임퓨테이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단계에서 법인세를 먼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징수관리에 유리하다. ② 배당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배당할 때 세금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측면에서 과세한 후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상계할 수

---

129) 沈峰, “古典之所得税与轨迹之所得税的比较研究-兼论我国的所得税一体化改革”, 现代经济讨论, 2002年第3期, 17页.

130) 董晓岩, “中国对股息的经济性重复征税及其对策研究”, 云南财贸学校报, 2009年第3期, 49页.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① 배당공제를 하는 비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법인소득 중 유보된 부분과 유보되지 않은 부분 사이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② 회사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배당률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131] ③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징수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2001년 전에 임퓨테이션는 특히 OECD 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세제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주주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이런 방식이 유럽연합법의 투자의 자유와 자본유동자유[132]에 위반된다고 유럽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점차 임퓨테이션으로부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다른 제도로 활용하게 되었다.[133] 또한 이런 분위기는 유럽을 넘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에서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2) 배당공제방식(dividend-exemption system)

배당공제방식은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배당하는 회사의 단계에서 분배이익과 유보이익을 포함한 회사의

131) 안희재, 위의 논문, 18면.
132) 임퓨테이션은 내국인들에게만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자금을 투자할 때, 최종세부담의 차이를 감안하여 투자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의 유동도 저해할 수 있다.
133) 朴丽清, “免除股息经济性重复征税的国际比较与借鉴”, 附件工程学院学报, 2005年第3期, 159页.

전부 이익에 대하여 법정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하고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만을 주주의 과세소득에 산입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식이 있다.[134]

이와 같은 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별도로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도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법인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없기에 법인의 과세이연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③ 일부만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당국의 의도가 이중과세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결정일 경우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④ 또한 임퓨테이션에 비하여 주주측면의 소득세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처리상 간편하고, 손금산입 방식에 비하여는 외국주주에 대하여 상계해 줄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였다.[135]

하지만 이 방식은 배당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없고, 회사에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136]

4. 혼합법(Hybrid System)

혼합법은 회사 및 주주단계에서 각각 다른 통합(integration)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회사단계에서는 차등세율방식을 사용하여 분배이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주

134) 马杰, 위의 논문, 14页.
135) 안희재, 위의 논문, 19면.
136) 안희재, 위의 논문, 19면.

주단계에서는 상술한 방법 중의 임의의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137] 이는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나 주주의 측면에서도 모두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서로 다른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서 매개 조정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주어 더 효과적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2절 OECD 국가의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

위의 절에서 살펴본 현금배당에 대한 여러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에는 각각 그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1980년대 이래, OECD 국가에서는 소득세제에 대하여 부단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조정정도 또한 상이하다. OECD 국가에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고 또 고유한 경제정책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해결방도를 찾았다. 하지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 이론과 실천의 과정 중에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더 적합한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물론 같은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다른 시기, 다른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는 또 다른 조정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아마 그 근본목적은 모두 세제개혁을 통하여 가능한 한 그 나라의 재정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OECD 국가의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대략 절반의 국가가 배당세액 공제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2000년대로 넘어와서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37) 付俊花, 위의 논문, 31页.

1. OECD 국가들의 이중과세조정 제도 선택과 그 추세

OECD 국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Integration)' - 곧 이들 간의 이중과세 조정 - 하는[138] 과정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전적인 세제를 택한 국가가 적어지고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은 고전적인 세제를 고수하는 국가였고, 오랫동안 법인실재설을 견지하여 왔으며[139] 회사와 주주는 두 개 서로 다른 이익의 주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이고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납세주체나 납세대상에서 모두 중복과세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부터 미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미국에서는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연방 최고 법정세율을 15%로 낮추었다. 그리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배당의 이중과세를 완화하였다.[140] 이런 세제상의 조치는 세금이 투자결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자극하고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을 제고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무렵 OECD 국가에서 채택한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8)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Integration)과정은 그 사이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139) 魏志梅, 위의 논문, 70页.
140) 魏志梅, 위의 논문, 72页.

방식	전체 OECD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국가
고전적 세제	33.3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차등세율방식	3.3	헝가리
배당이익공제법	6.7	그리스, 슬로바키아
수정된 고전적 세제	6.7	폴란드, 미국
배당공제방식	23.4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
임퓨테이션	26.6	영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스페인

「표 19」OECD 국가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제도 선택 현황(2005)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① 비록 2005년 당시 1/3의 OECD 국가가 고전적인 세제를 쓰고 있지만 그 비율은 2001년의 14개 국가, 46.7%에 비하여 적어진 편이다. 동시에 2/3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다른 정도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② OECD 국가 중 임퓨테이션을 사용하는 국가가 적어지고 있다. 2001년 전에 임퓨테이션을 사용하는 국가는 15개국으로서[141] 당시 OECD 국가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당시에는 8개 나라만 임퓨테이션방식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2001년보다 임퓨테이션 방식을 선택한 나라가 7개 적어졌다. ③ OECD 국가 중에서 배당공제방식을 적용하는 나라의 비중이 높아졌다. 2002년에는 1개 나라로서 3.3%를 차지하였다.[142] 이렇게 되면서, 종래에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임퓨테이션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141) 안희재, 위의 논문, 18면.
142) 董晓岩, 中国对股息的经济性重复征税xx 及其对策研究, 云南财贸学校报, 2009年第3期, 35页.

2. OECD 국가 이중과세조정제도 선택의 새로운 발전

절반정도의 유럽국가에서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취하여 회사와 주주의 세금징수 문제를 조화시켜 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근래에 와서 변화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국내법에 관한 유럽법원의 판결이 유럽연합 국가의 세법의 수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럽연합조약」 중 직접세의 징수에 관련된 규정에[143]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은 유럽연합의 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유럽법원에서 그 국내법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다.

1) 오스트리아 대외투자소득 불공정대우 판례(case 315/20)

우선 오스트리아에서 해워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사건에 대한 2004년 7월 15일 유럽법원(ECJ)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neliese Lenz는 오스트리아 주민이면서 독일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세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받은 투자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내 회사에서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수처리상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차적으로 25%의 배당소득의 예납절차로 될 수 있는 법인세를(예납세금) 징수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시 임퓨테이션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소득세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결국 납세자가 둘 중 더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Anneliese Lenz는 이러한 세제 하에서는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거주지국인 오스트리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아의 세법이 유럽연합의 자본이동의

143) 유럽연합조약 제56조와 58조의 규정.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에 Anneliese Lenz는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에서는 2002년에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법원에 선결적 판결을 신청하였으며, 2004년에 유럽법원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임퓨테이션에 관한 세법상 규정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하여 불공정한 제한을 한다는 선결적 판결을 내놓았다.

2) 핀란드의 임퓨테이션 판례(case 319/02)

핀란드에서는 1990년에 임퓨테이션을 도입하였다. Petri Mikael Manninen은 핀란드의 거주자이면서, 스웨덴 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다. 이 배당소득은 스웨덴의 법인세, 스웨덴에서 지불하여야 할 예납세액 및 핀란드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다. 하지만 Manninen이 핀란드의 거주자인 회사에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Manninen는 임퓨테이션을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한 세수대우를 주장하였고 핀란드 세무당국에 구속력이 있는 사전심사(a binding advance ruling)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핀란드 세무당국에서는 Manninen이 국외에서 받은 배당에 대하여 핀란드 세법에 의하여 한 번 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고, 이에 불복한 Manninen은 다시 한 번 핀란드의 세법이 배당세액에 대한 임퓨테이션 규정이 「유럽연합조약」의 제56조와 제58조를 위반한다고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2004년에 Manninen의 주장을 받아들여 핀란드의 세법에서 배당소득의 임퓨테이션 관련 규정이 자유유동의 규정을 제한하였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3) 유럽법원의 판결이 그 회원국에 대한 영향

유럽연합의 회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종래로 임퓨테이션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대형 글로벌 회사의 계열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마, 네덜란드 거주자에게만 임퓨테이션을 실행하고 다른 비거주자의 중복되는 세금을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면 큰 왜곡이 나타날 것이고, 다른 비거주자에게 모두 임퓨테이션을 적용하게 된다면 네덜란드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겨왔다.

유럽법원에서 네덜란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시범작용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유럽 국가로 하여금 임퓨테이션을 다른 조정방식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2005년에 임퓨테이션을 폐지하고 배당공제방식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를 폐지한 목적은 핀란드의 상장회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44]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대하여 많은 변경을 가하였다. 우선, 거주자인 기업 간에 분배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하였다. 만약 배당이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지불한 것이고 비상장회사가 그 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고 있거나 배당을 받는 회사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소유했을 때 75%의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하였다.

개인이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이 한 개 과세연도에 최대 9만 유로나, 회사를 놓고 볼 때 최대 배당소득의 9%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초과한 부분 중 70%는 28%의 세율에 의하여 자본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

144) 邓丽娟, 对当前我国企业所得税和个人所得税重复征税问题的思考, 2011.2, 知识经济, 3页.

세된다. 배당소득이 회사의 순자산의 9%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한 부분 중 70%에 대하여는 최고 60%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된다. 하지만 개인이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핀란드 상장회사 혹은 유럽연합에 속하거나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주민기업에서 취득한 소득 중 30%는 면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28%의 세율에 의해 세금이 징수된다.[145] 만약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주민기업 혹은 핀란드와 세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받은 분배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146]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아직도 고전적인 세제를 고수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방식에는 조합과세방식;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 차등세율방식; 배당 받는 주주의 방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임퓨테이션과 배당공제방식; 혼합적용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방식 외에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다른 방식들도 존재한다. 상술한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법들은 모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고전적인 세제에서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세제의 중립성을 더 잘 보장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더 효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퓨테이션제도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면서 개인소

145) 상술한 비례는 2005년 기준의 통계수치이다.
146) 邓丽娟, 위의 논문, 4页.

득세의 누진율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적 이상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중과세조정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OECD 국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00년 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임퓨테이션 제도를 선호하여왔지만 2000년부터 OECD 국가 내에서 조정방식의 선택에서 새로운 양상이 보여 졌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결 결과로 많은 국가에서도 임퓨테이션 제도의 공평하지 않은 면을 인식하고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런 추세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조정제도를 선택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국의 실정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변화하는 사회 · 경제 · 법률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이중과세 조정의 방식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5장 중국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위의 장에서, 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아직도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이중과세조정제도가 따라야 하는 원칙에 기초하되, 현재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적어본다.

제1절 대안의 평가기준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중복과세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모두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각각 다른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에서도 현 단계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여 효과적인 제도를 실시하여야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세제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기초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를 달성하려면 본 논문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단은 “효율이 우선적이고 공평을 동시에 중시하는”[147] 것을 전체적 기조로 하되 나아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추가적인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생각들이다.

1. 경제성장원칙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의 효과를 이루는 것은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

147) 王曙光, 蔡德发, 对股息的经济性重复课税问题的讨论, 1995, 税务研究, 27页.

이며 또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다.[148]

2. '적절해소' 원칙(适当解除原則)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중과세를 전부 해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실제 세부담에 맞추어 그러한 수준까지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도와 사회 각 업종의 평균적인 이윤율의 수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수중립원칙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의 설계는 회사나 투자자의 경제적 선택과정에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최대한으로 원래 있었던 조세정책이 납세자 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149] 이는 주로 세제가 회사의 융자행위, 이익 분배, 유보이익에 대한 결정 등 면에서 끼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가리킨다.

4. 사회안정원칙

이 원칙 하에서는 공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거나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화나 부의 분배의 불공평성이 이슈화 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150]

---

148) 王永泉, 李伟, 刍议我国权流通时代上市公司股息红利双重征税问题, 2013.10, 中国证券期货, 45页.

149) 陈志伟, "缓解 (免除) 股息经济性重复课税问题探讨", 2014.9, 合作经济与科技, 33页.

즉 효율을 달성한다고 하여 공평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5. 행정효율원칙

이런 제도적 설계는 납세자의 이행비용과 과세관청의 징수관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 이래 세계 각국은 세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복잡하고 효율이 낮은 세제가 발생시키는 많은 사회비용은 그러한 세제를 실시할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즉 상술한 여러 원칙에 비추어,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우선 자본을 투입하여 운영, 분배하는 데까지를 투자의 완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 비추어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다. 조세정책도 그에 따라야 한다. 개인자본이 회사의 운영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간소득이고 개인에게 분배된 배당만이 최종소득인바, 따라서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한편 투자과정 중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현금배당에 대한 세부담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인 실제 세부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재 중국은 독자기업과 조합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징수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현금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 결과는 방금 언급한 기업형태의 최종 세부담과 비슷해야 할 것이다.

(4) 소득세의 복잡성과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구분하여 징

150) 陈志伟, 위의 논문, 34页.

수하는 상황 하에서, 이중과세를 피하고 세금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중국 소득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제의 전제하에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법의 연결을 중시해야 한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간의 정책적 연결에 주의하고 두 세금간의 총체적인 세부담의 평형 혹은 효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상의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조세 공평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회의 공평정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중국 법제를 고려한 대안의 분석

상술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식은 각각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본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중국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중국 현재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는 중국 학계에서 현금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 고려하는 주류적인 관점에 대하여 분석해보겠다.

1. 경제적 중복과세조정방식에 대한 비교

우선 위의 장에서 서술한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의 기본이론을 기반으로 고전적인 세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여러 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51]

151) 田立三, “公司所得税与个人所得税一体化研究”, 北京交通大学硕士学位论文, 2005年3月, 10页.

구분	조합과세방식	회사 단계		주주 단계	
		차등세율방식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	임퓨테이션	배당공제방식
1. 경제상의 왜곡현상					
1) 완전 해소	●				
2) 부분 해소		●	●	●	●
2. 공평한 세부담					
1) 세부담이 공평함	●		●	●	
2) 개인소득세 누진성 유지	●		●	●	
3. 재정수입					
1) 세소손실이 큼	●				
2) 세수손실이 작음		●	●	●	●
4. 세무행정 방면					
1) 복잡함	●		●		●
2) 간편함		●		●	

「표 20」각종 이중과세의 조정방식의 효과상의 비교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조정 방식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정도 및 통합하는 단계상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고전적인 세제와 비교할 때, 조합과세방식은 그 자체만으로 선택상의 왜곡현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은 그 조정의 한도, 즉 어떤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지에 따라 경제상의 왜곡현상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누진세의 측면에서는 조합과세방식,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과 배당세액 공제 방식이 우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조합과세방식은 배당하는 회사를 '꿰뚫어' 바로 주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기에 다른 여러 방식에 비해 세수의 일실이 크고, 개개 주주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만큼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조세행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조합과세방식은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의 도표만 놓고 볼 때, 여러 조정방법들 중에서 배당세액 공제 방식은 일단 법인세를 걷고 누진세 하에서 각각 자연인이 부담할 세액

과 법인세의 차액을 각 개인의 단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개인단계에서의 누진세율을 반영 할 수 있어[152] 공평 면에서 세수의 중립을 수호할 수 있고 효율 면에서 그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국의 현행규정에 의하여 각 조정방법 하에서 주주가 최종적으로 지는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배당 손금산입 방식	차등세율법		배당공제방식		임퓨테이션
		20%	15%[153]	100% 공제	50% 공제[154]	
회사의 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과세소득	0	100	100	100	100	100
세율	25%	20%	15%	25%	25%	25%
세액	0	20	15	25	25	25
배당가능이익	100	80	85	75	75	-
과세소득	100	80	85	0	37.5	100
세율	20%	20%	20%	20%	20%	20%
세액	20	16	17	0	7.5	20
세액 총합	20	36	32	25	32.5	20[155]
실제 세부담	20%	36%	32%	25%	32.5%	20%

「표 21」중국 현행법 조건상 각 조정방식의 세부담 비교

위의 표에 의하여, 세수당국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세금을 비교하여 보면, 차등세율법(20%)>배당공제방식(50%공제)>차등세율법(15%)>배당공제방식(100%공제)>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임퓨테이션의 순서이다. 이렇게 되면 물론 주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세부담의 크기의 순서는 그 반대로 될 것이다. 현재 중국법상의 개인기

152)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2015, 518면 참조.
153) 유보이익에 대한 세율은 25%이지만 배당이익에 대한 세율이 20%인 경우와 15%인 경우.
154) '절반소득' 방법(half income system)과 같다.
155)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부담한 세액이 개인소득세보다 5원 많으므로 5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업에 대한 소득세 세율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차등세율법이나 배당공제방식(50%)등이 세율상에서 비슷하게 맞추어 지는 한편, 이자에 대한 세율을 고려하여 보면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이나 임퓨테이션의 최종 세부담이 20%로 이자에 대한 세부담과 같다.

2. 자금조달 방식의 선택상의 왜곡에 대한 조정

중국 현행법상,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세율은 20%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형식을 결정할 때의 개인기업과 회사제기업 사이의 선택에 대한 왜곡을 조정하여 경제적 이중과세의 악영향을 줄이려면 투자자가 개인기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회사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실제 세부담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투자자가 개인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최고 35%의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등세율법과 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제 기업에서 자금조달의 방식을 선택할 때를 따져본다면, 주주가 회사를 통하여 받은 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와 같이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지급배당금 손금산입방식과 임퓨테이션방식 하에서 그 세부담이 가장 작기에 따라서 주주가 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156] 그럼 이 세 가지 세율을 다 비슷하게 맞추어 줄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단순히 개인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율 35%와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 20%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아마, 중국 현행법상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데 더하여 이자에 대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156) 시간 차이를 무시한다면,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그 구조상 동일하다.(세법강의)

중국 현행법상 개인소득세는 분류소득세제를 실행한다. 즉 서로 다른 성질의 소득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비용을 공제하고 서로 다른 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형식은 납세자의 전면적인 담세력을 표현하기는 어렵고, 종합소득이 높지만 관련된 개인소득세 항목이 분산된 인은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 관련된 개인소득세 항목이 집중된 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는 담세력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공평의 세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제 하에서는, 개인의 전부 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 부분의 소득은 전부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공평하다. 종합소득세제 형식은 세수 징수관리에 대한 요구의 수준이 비교적 높고 따라서 집행비용이 높지만 탈세나 조세회피 방지에 효과적이고 재정수입이 높아 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징세행정의 효율도 높을 것이다.

그럼 아래에는 아직 종합소득과세로 전환되지 않은 현 시점에, 어떤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조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하겠는가를 논의하여본다.

3.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 선택에 대한 분석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을 중국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세부담은 20%로서 과세당국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이 방식은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배당 받는 주주의 측면에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에 그 세수처리상에서는 간편하다. 하지만 이는 배당할 금액을 미리 공제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열거될 배당액등 비용에 대한 열거절차가 비교적 엄격하다. 중국에서는 현재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사전에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이런 방

법은 회사가 법인세를 내기 전에 지급배당을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회사로 하여금 과도하게 이익분배를 하게 하여 회사의 재투자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급배당 손금 산입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현금배당 중 나타나는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수입의 축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4. 배당세액 공제 방식의 선택에 대한 분석

국제적으로 임퓨테이션은 비교적 이상적인 방식으로 여겨졌었다. 즉 기업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각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배당에 귀속시켜 주주가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에 귀속된 기업소득세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경제적이중과세의 조정방향은 임퓨테이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특히 대만학자들의 주류적인 관점이 그러하다.[157])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 시점의 중국에서 임퓨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재 중국에는 세금을 적절히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임퓨테이션을 실시할 객관적인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다. 임퓨테이션은 자진신고납부제도, 충분한 납세정보의 수집 및 세제에 관한 비교적 높은 납세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국 현재를 놓고 볼 때, 우선 ① 자진 신고납부의 감독관리체계는 아직도 발전이 필요하다. 또 ② 아직 중국에서는 세무관청과 기타 행정기관 심지어 중앙과 지방의 과세관청에서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외의 선험적

157) 钱晟, 卢凌波, 当前我国所得税制中的经济性重复课税问题探析, 2002(9), 当代财经, 9页.

인 예를 보면 임퓨테이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 종합세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아직 분류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중국에서의 세제개혁의 방향이 현행의 분류과세로부터 종합과세로 전환될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되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도 오랫동안의 발전을 거쳐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임퓨테이션제도는 아직 중국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차등세율방식 선택에 대한 분석

차등세율방식은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을 징수하기에 편리하여 이런 방식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적으며 행정적 절차상에도 비교적 편리하다. 또한 회사가 분배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여 기업소득세만 조정하면 되기에, 현재의 세제에 주어야 하는 변화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행하기 편리하다. 더욱이 정부는 어떤 제도 개선에 의하여서든 한 번에 많은 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세수의 적시성과 안정성에 유리하고 경제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차등세율법도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서 완벽한 방식은 아니지만 중국 현재의 실제를 기반으로 세수 측면의 필요와, 납세자들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실제의 징세 수준, 그리고 경제발전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세율방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장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차등세율방식은 일정한 정도에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작용만 할뿐 경제적 과세중복이 주는 악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또한 회사의 유보이익에 대하여 배당이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회사에서 유보이익으로 재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에,

차등세율방식은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좋은 방식이나,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기에는 그 폐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6. 배당공제방식의 선택에 대한 분석

배당공제방식, 특히는 그 중에서 배당소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별화 개인소득세전략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여 왔던 재정세수[2005]102호 문서의 규정과 같은 조정제도이다. 중국 현행 개인소득세는 분류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속하여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기에 개혁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세수의 일실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주주의 측면에서만 조정을 하여주면 되므로 실제 운용에서도 편의하여 현재 중국의 징세행정의 수준에 부합되며 세금징수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의 세금을 확보하는 면이나, 주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면에서 보나 모두 적합한 방식으로 보인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중국의 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의 정도와 그 문제점에 대비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해 나가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개선 방안은 다른 세제개혁을 진행한 국가와 같이 중국의 현 단계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 시점의 중국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여야만 경제적 이중과세조정제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경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성장원칙, 제도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세수중

립원칙, 그 실행상의 편의를 보장하는 행정효율원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주주의 세부담을 적절하게 제거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수 확보를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여러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식을 비교하여 본 결과,

① 조합과세방식은 그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면에서,

②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은 안정한 세수를 확보하는 면에서와 공제할 비용을 열거하는 절차가 엄격한 면에서,

③ 임퓨테이션제도는 중국의 현재의 법제상 아직 임퓨테이션을 시행할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식이라 여겨졌다.

동시에 ④ 차등세율방식은 그 징수의 편의성과 개혁의 용이성 및 그 실행에 요구되는 과세행정에 관한 조건의 수준과 세금의 확보, 주주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면에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회사의 유보이익에 대하여 배당이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회사에서 유보이익으로 재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단기적으로나 과도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⑤ 배당공제방식중 배당소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절반소득' 제도는 중국에서 사용해오던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서 그 개혁의 용이성과, 시행이 편한 점, 또한 세금징수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의 세금을 확보하는 면이나, 주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면에서 보나 모두 적합한 방식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이중과세문제와 그 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이중과세는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한 세금징수 주체,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혹은 그 이상 과세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과세대상 측면에서 생기는 이중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의 현금배당 중 경제적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금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가지 형태로서, 배당 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소득으로 인식되어 한번 과세되고 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인식되어 또 한 번 과세된다. 현금배당에 대한 이런 과세구조로 말미암아 이중과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공평과 효율의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평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조세정책은 그 자체를 통하여 세금징수에 관련된 주체에게 동일함이 아닌 기회상의 균등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한편 효율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조세정책은 그 자체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행해지는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는 투자자가 경영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생산요소의 투입, 혹은 융자방식과 이익분배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모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일정하게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공평성과 그 실시효율을 제고하는 방면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중국 현행법상 현금배당에 관한 과세구조에 대하여는, 현금배당

에는 배당하는 회사, 배당 받는 기업투자자 혹은 개인투자자 등 세 개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과세문제에 적용되는 규정은 주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소득세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고전적인 세제에 속한다.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는 그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우선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후,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또 그가 받은 소득을 인식하여 계속하여 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개인소득세법」에는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하거나 배당 받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 현행세법상 현금배당 중에는 틀림없이 법인과 투자자사이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중국법상에서 현금배당 중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배당받는 개인의 측면에서만 조정을 진행하여 주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단계로, 현재에는 적격 법인사이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주주의 측면에서는 그가 주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중국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는 일정한 정도에서 완화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조정제도에도 부족한 점은 존재한다. 여전히 일정한 부분의 현금배당에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도 부단히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아직도 고전적인 세제를 고수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방식에는 조합과세방식; 배당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

차등세율방식; 배당 받는 주주의 방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임퓨테이션과 배당공제방식; 혼합적용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방식 외에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다른 방식들도 존재한다. 상술한 현금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조정방법들은 모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수의 중립성에 더 가깝고, 더 효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퓨테이션제도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면서 개인소득세의 누진율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적 이상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중과세조정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OECD 국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00년 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임퓨테이션 제도를 선호하여왔지만 2000년부터 OECD 국가에서 조정방식의 선택에서 새로운 양상이 보여졌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유럽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로 많은 국가에서도 임퓨테이션 제도의 공평하지 않은 면을 인식하고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런 추세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조정제도를 선택할 때에는 자국의 실정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변화된 사회의 이념과 상황에 따라서도 부단히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차등세율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당소득공제방식 중의 한 가지 형태인 절반소득제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중국문헌

단행본

陳少英, 公司涉稅法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劉俊海, 現代公司法(第三版)上冊, 法律出版社, 2015

張守文, 稅法原理(第六版), 北京大學出版社, 2012.8

Richard A. Musgrave, Peggy Boswell Musgrave, 鄧子基譯, 財政理論与實踐, 2003

李宜琛, 日耳曼法, 商務印書店, 2002

Adam Smith, 郭大力譯, 國民財富的性質和原因的研究, 商務印書館, 2004

劉劍文, 財稅法－－原理、案例与材料(第二版), 北京大學出版社, 2014.11

中國這冊會計師協會, 稅法, 經濟科學出版社, 2015年版

范健, 王建文, 公司法(第四版), 法律出版社, 2015.8

논문

李丰, 論對公司和股東的國內重夏征稅, 稅務与經濟, 2003年第6期

肖棚, 所得稅一体化研究, 稅務与經濟, 2001年第2期

馬杰, 我國股息經濟性重夏課稅的法律規制研究, 華東政法大學法學碩士論文, 2011年

王利明, 論法人的本質和能力, 民商法研究第三輯, 法律出版社, 1999年

王永泉, 李偉, 芻議我國權流通時代上市公司股息紅利双重征稅問題, 中國証券期貨, 2013.10

肖鵬, 所得稅一体化研究, 稅務与經濟, 2001年第2期

王付軍, 經濟性重夏課稅研究, 北方工業大學碩士論文, 2011年4月

楊宝, 股息稅減半征收影響了公司分紅決策嗎 -財稅〔2005〕102号文件的經驗証据, 稅務与經濟, 2015.9
咎星源, 我國股息經濟性重夏征稅研究-給予股息个人所得稅新規的再思考, 厦門大學法學碩士論文, 2014.5
錢晟, 盧凌波, 当前我國所得稅制中的經濟性重夏課稅問題探析, 2002(9), 当代財經
付俊花, 所得稅中的股息經濟性重夏課稅問題研究, 2008, 山東大學碩士論文
吳星泰, 論所得稅兩稅合一的法理基础与制度創新, 中南大學碩士論文, 2011.5
魏志梅, 企業所得稅与个人所得稅一体化的國際比較与借鑒, 2006.9, 稅務研究
沈峰, 古典之所得稅与軌迹之所得稅的比較研究-兼論我國的所得稅一体化改革, 現代經濟討論, 2002年第3期
董曉岩, 中國對股息的經濟性重夏征稅及其對策研究, 云南財貿學校報, 2009年第3期
朴麗清, 免除股息經濟性重夏征稅的國際比較与借鑒, 附件工程學院學報, 2005年第3期
田立三, 公司所得稅与个人所得稅一体化研究, 北京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05.3
陳志偉, 緩解（免除）股息經濟性重夏課稅問題探討, 合作經濟与科技, 2014.9
程瑤, 我國現行稅制中存在的重夏征稅問題, 遼宁稅務高等專科學校學報, 2004.2
鄧麗娟, 對当前我國企業所得稅和个人所得稅重夏征稅問題的思考, 知識經濟, 2011.2
杜麗, 從股息稅對公司資本成本的影響談我國的股息稅制改革, 世界經

濟情況, 2007.1
范瑞猛, 証券投資所得重夏征稅的問題探討, 福建論壇, 2006.3
關華, 潘明星, 我國股息重夏征稅及其減除, 管理世界, 2011.5
黃仙珠, 股息紅利个人所得稅新政解讀, 財務与會計(理財版), 2013.1
胡文獻, 古典制所得稅与歸集制所得稅比較硏究, 財會月刊, 2015.1
皮海洲, 紅利稅差別化征收應廢止, 金融波蘭(財富), 2012.12
王琼, 差別化个人所得稅起征点標准的政策缺陷分析, 經濟与管理, 2006.1
王曙光, 蔡德發, 對股息的經濟性重夏課稅問題的討論, 1995, 稅務硏究
王永泉, 李偉, 芻議我國權流通時代上市公司股息紅利双重征稅問題, 中國証券期貨, 2013.10
張敏洁, 關于我國改善經濟性重夏征稅問題的現狀及展望－－針對公司已分配股息及紅利的理論分析, 經濟硏究, 2011

한국문헌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5
신재열, 신 중국세법해설, 어울림, 2010
안희재, 법인-주주간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EU의 변화와 역외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6

외국문헌
Cheryl D. Block, Examples & Explanations: Corporate Taxation, 4th Edition, 2009
Joel Slemrod & Jon Bakija, Taxing Ourselves – A Citizen's Guide to the Debate over Taxes (4th edition), 2008
JOHN TILEY, Revenue Law, OXRORD HART PUBLISHING, 2000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웹사이트

http://baike.baidu.com/view/29385.htm（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062367.htm（百度百科）

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xwdd/200808/t20080822 68625.html（積极完善分紅制度, 引導公司持續回報股東）

http://www.kuaiji.com/weixin/2121651（會計网）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81&cid=42131&categoryId=42131（법률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76&cid=42131&categoryId=42131（법률용어사전）

부록 1. 중국법상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 세부담 연혁

<table>
<tr><td rowspan="3"></td><td rowspan="3">개인기업</td><td colspan="2">이자</td><td colspan="5">상장회사</td><td colspan="3">비상장회사</td></tr>
<tr><td rowspan="2">개인
주주</td><td rowspan="2">법인
주주</td><td colspan="3">개인주주</td><td colspan="2">법인주주</td><td rowspan="2">개인
주주</td><td colspan="2">법인주주</td></tr>
<tr><td>1년
이상</td><td>1월-1년</td><td>1월
이하</td><td>1년
이상</td><td>1년
이하</td><td>1년
이상</td><td>1년
이하</td></tr>
<tr><td>2005. 이전</td><td rowspan="2">33%</td><td rowspan="5">35%</td><td rowspan="2">33%</td><td colspan="3">46.40%</td><td colspan="2">49.75%</td><td>46.40%</td><td colspan="2">49.75%</td></tr>
<tr><td>2005-2008. 이전</td><td colspan="3">39.70%</td><td colspan="2">49.75%</td><td>46.40%</td><td colspan="2">49.75%</td></tr>
<tr><td>2008-2012. 이전</td><td rowspan="3">25%</td><td rowspan="3">25%</td><td colspan="3">32.50%</td><td>25%</td><td>43.75%</td><td>40%</td><td>25%</td><td>43.75%</td></tr>
<tr><td>2012-2015. 이전</td><td>28.75%</td><td>32.50%</td><td>40%</td><td>25%</td><td>43.75%</td><td>40%</td><td>25%</td><td>43.75%</td></tr>
<tr><td>2015. 이후</td><td>25%</td><td>32.50%</td><td>40%</td><td>25%</td><td>43.75%</td><td>40%</td><td>25%</td><td>43.75%</td></tr>
</table>

부록 2. 관련 법조문 중한대조표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第二條　企業分爲居民企業和非居民企業。 本法所称居民企業,是指依法在中國境內成立,或者依照外國(地區)法律成立但實際管理机构在中國境內的企業。 本法所称非居民企業,是指依照外國(地區)法律成立且實際管理机构不在中國境內,但在中國境內設立机构、場所的,或者在中國境內未設立机构、場所,但有來源于中國境內所得的企業。	제2조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분류된다. 본 법에서 일컫는 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법률에 의거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법률에 의거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기업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그 실제 경영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지하지 않지만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국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第三條　居民企業應当就其來源于中國境內、境外的所得繳納企業所得稅。 非居民企業在中國境內設立机构、場所的,應当就其所設机构、場所取得的來源于中國境內的所得,以及發生在中國境外但与其所設机	제3조 거주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국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

构、場所有實際聯系的所得,繳納企業所得稅。

非居民企業在中國境內未設立机构、場所的,或者雖設立机构、場所但取得的所得与其所設机构、場所沒有實際聯系的,應当就其來源于中國境內的所得繳納企業所得稅。

우, 설립한 기구 및 장소가 취득한 중국내의 원천소득 및 중국 국국외의 원천 소득으로 당해 설립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잇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반드시 중국 국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四條　企業所得稅的稅率爲25%。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第六條　企業以貨幣形式和非貨幣形式從各种來源取得的收入,爲收入總額。包括:

(一)銷售貨物收入;

(二)提供勞務收入;

(三)轉讓財産收入;

(四)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收益;

(五)利息收入;

(六)租金收入;

(七)特許權使用費收入;

(八)接受捐贈收入;

(九)其他收入。

제6조 기업이화폐형식과 비화폐형식으로 각종 원천소득에서 취득한 수입을 수입총액으로 하는 바,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판매수입

(2) 용역공급수입

(3) 자산양도수입

(4)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수입

(7) 특허권사용료수입

(8) 수증수입

(9) 기타수입

第十條　在計算應納稅所得額時,下列支出不得扣除:

(一)向投資者支付的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收益款項;

(二)企業所得稅稅款;

(三)稅收滯納金;

(四)罰金、罰款和被沒收財物的損失;

(五)本法第九條規定以外的捐贈支出;

(六)贊助支出;

(七)未經核定的准備金支出;

(八)与取得收入无關的其他支出。

제10조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아래에 열거하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불한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2) 기업소득세 세액

(3) 체납금

(4) 벌금 및 벌과금과 몰수로 인한 손실

(5) 본 법 제9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부금

(6) 찬조지출

(7)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 취득한 소득과 관계없는 기타의 지출

第十九條　非居民企業取得本法第三條第三款規定的所得,按照下列方法計算其應納稅所得額:

(一)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收益和利息、租金、特許權使用費所得,以收入全額爲應納稅所得額;

(二)轉讓財産所得,以收入全額減除財産淨值后的余額爲應納稅所得額;

(三)其他所得,參照前兩項規定的方法計算應納稅所得額。

제19조 비거주자 기업이 본 방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에 다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배당 및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그 수입총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2) 자산양도수입은 그 수입총액에서 당해자산의 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3) 기타의 수입은 상기 (1), (2)항에 규정된 방법을 참고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第二十七條　企業的下列所得,可以免征、減征企業所得稅:

(一)從事農、林、牧、漁業項目的所得;

(二)從事國家重点扶持的公共基础設施項目投資經營的所得;

(三)從事符合條件的环境保護、節能節水項目的所得;

(四)符合條件的技術轉讓所得;

(五)本法第三條第三款規定的所得。

제27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에 대하여는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 임, 목,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 항목의 투자경영에 종사하고 취득하는 수입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절수항목에 종사하고 취득하는 수입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 수입

(5)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第三條　企業所得稅法第二條所称依法在中國境內成立的企業,包括依照中國法律、行政法規在中國境內成立的企業、事業單位、社會團体以及其他取得收入的組織。

企業所得稅法第二條所称依

제3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 규정한 법률에 의거 중국 국내에서 설립한 기업에는, 중국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照外國(地區)法律成立的企業,包括依照外國(地區)法律成立的企業和其他取得收入的組織。	중국「기업소득세법」 제2조에 규정한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에는, 외국(지역)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第六條 企業所得稅法第三條所称所得,包括銷售貨物所得、提供勞務所得、轉讓財産所得、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所得、利息所得、租金所得、特許權使用費所得、接受捐贈所得和其他所得。	제6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한 소득에는 상품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분배)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및 수증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第八十三條 企業所得稅法第二十六條第（二）項所称符合條件的居民企業之間的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收益，是指居民企業直接投資于其他居民企業取得的投資收 益。企業所得稅法第二十六條第（二）項和第（三）項所称股息、紅利等權益性投資收益，不包括連續持有居民企業公開發行幷上市流通的股票不足12个月取得的 投資收益。	제83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2)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간의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이란, 거주자 기업이 기타 거주자기업에 투자하고 취득하는 투자수익을 가리킨다. 동법 제(2)와 제(3)에 규정한 배당, 분배소득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하여 유통중인 주식을 보유하고 연속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권익성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第九十一條 非居民企業取得企	제91조: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

業所得稅法第二十七條第（五）項規定的所得，減按10%的稅率征收企業所得稅。(...)	득세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하는 경우, 1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第一條　在中國境內有住所,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个人所得稅。	제1조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在中國境內无住所又不居住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个人,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个人所得稅。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第三條　个人所得稅的稅率:	제3조 개인소득세세율:
一、工資、薪金所得,适用超額累進稅率,稅率爲百分之三至百分之四十五(稅率表附后)。	임금 및 급여소득은 3%-4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별첨 세율표 참조)
二、个体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和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适用百分之五至百分之三十五的超額累進稅率(稅率表附后)。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과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5%-3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별첨 세율표 참조)
三、稿酬所得,适用比例稅率,稅率爲百分之二十,并按應納稅額	원고료소득은 20%단일세율로

減征百分之三十。

四、勞務報酬所得,适用比例稅率,稅率爲百分之二十。對勞務報酬所得一次收入畸高的,可以實行加成征收,具体辦法由國務院規定。

五、特許權使用費所得,利息、股息、紅利所得,財産租賃所得,財産轉讓所得,偶然所得和其他所得,适用比例稅率,稅率爲百分之二十。

第六條　應納稅所得額的計算:

一、工資、薪金所得,以每月收入額減除費用三千五百元后的余額,爲應納稅所得額。

二、个体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以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減除成本、費用以及損失后的余額,爲應納稅所得額。

三、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以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減除必要費用后的余額,爲應納稅所得額。

四、勞務報酬所得、稿酬所得、特許權使用費所得、財産租賃所得,每次收入不超過四千元的,減除費用八百元;四千元以上的,減

과세하되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경한다.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일회수령액이 고액일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추가 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및 기타 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제6조 과세소득의 계산:

①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3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④인적용역대가, 원고료소득,

除百分之二十的費用,其余額爲應納稅所得額。

五、財産轉讓所得,以轉讓財産的收入額減除財産原値和合理費用后的余額,爲應納稅所得額。

六、利息、股息、紅利所得,偶然所得和其他所得,以每次收入額爲應納稅所得額。

个人將其所得對教育事業和其他公益事業捐贈的部分,按照國務院有關規定從應納稅所得中扣除。

對在中國境內无住所而在中國境內取得工資、薪金所得的納稅義務人和在中國境內有住所而在中國境外取得工資、薪金所得的納稅義務人,可以根据其平均收入水平、生活水平以及匯率變化情况确定附加減除費用,附加減除費用适用的范圍和標准由國務院規定。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 수입액이 4000원미만일 때 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4000원 이상일 때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⑤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⑥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와 중국 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수준 생활수준 및 환율

변동에 근거하여 추가로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추가필요경비 공제의 범위 및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第七條　納稅義務人從中國境外取得的所得,准予其在應納稅額中扣除已在境外繳納的个人所得稅稅額。但扣除額不得超過該納稅義務人境外所得依照本法規定計算的應納稅額。

제7조 납세의무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第三十四條　股東按照實繳的出資比例分取紅利;公司新增資本時,股東有權优先按照實繳的出資比例認繳出資。但是,全体股東約定不按照出資比例分取紅利或者不按照出資比例优先認繳出資的除外。

제34조 주식이 실제로 출자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다. 단, 전체 주주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三十七條　股東會行使下列職權:

(...)

(六)審議批准公司的利潤分配方案和弥補亏損方案;

제37조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6) 회사의 이윤분배방안과 손실보충방안의 심사. (…)

第八十一條　股份有限公司章程應当載明下列事項:

(...)

(九)公司利潤分配辦法;

중국「회사법」 주식유한회사편 제81조 주식유한회사의 회사정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

第一百六十六條　公司分配当年税后利潤時,應当提取利潤的百分之十列入公司法定公積金。公司法定公積金累計額爲公司注冊資本的百分之五十以上的,可以不再提取。

公司的法定公積金不足以弥補以前年度亏損的,在依照前款規定提取法定公積金之前,應当先用当年利潤弥補亏損。

公司從税后利潤中提取法定公積金后,經股東會或者股東大會決議,還可以從税后利潤中提取任意公積金。

公司弥補亏損和提取公積金后所余税后利潤,有限責任公司依照本法第三十四條的規定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東持有的股份比例分配,但股份有限公司章程規定不按持股比例分配的除外。

股東會、股東大會或者董事會違反前款規定,在公司弥補亏損和提取法定公積金之前向股東分配利潤的,股東必須將違反規定分配的利潤退還公司。

公司持有的本公司股份不得

기재하여야 한다. (…) (9) 회사의 이윤분배방안. (…)

제166조 회사에서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을 배당할 때, 먼저 이익의 10%을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이미 회사의 출자자본의 50%인 회사는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그 전년도의 손실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이익으로 손실을 보충하여야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임의준비금을 공제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이전년도의 손실을 보충하고 준비금을 공제한 후, 세후이익이 있다면 유한책임회사는 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진행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하지만 주식유한회사 회사정관에서 주

分配利潤。	식 소유 비례에 따라 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제외로 한다.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손실을 보충하고 법정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했을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부분의 배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Economical Double Taxation in Chinese tax law

NAN ZHIDONG

LAW, TAX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economic reforms in 1987, Chinese economy was rapidly developed. Accordingly, to consolidate progress to date and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Chines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market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performing basic action should be charmed. So,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investment by spark investors' potential to do more investment for China to make more development market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about the way to control the double taxation of the way to reduce tax burden. The double taxation is not bad itself, but the effect because of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the choices, and it could lead to the distortion of the economy.

In China, the way to control the economical taxation changed as follow. First control only at the personal side - control in the

companies that qualified - while keeping the control in the company's sides, also calculation in different rate in personal side. In China the economic double taxation is controled in part, but still have shortage. So in China, the government still have to reduce the effect of economic double taxation.
In this study, to find the Optimized way that can be used in China's economy, I analysis the way to control the double taxation that widely used in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Find that, the split-rate system is batter way in short term, while the half income system is more suitable for Chinese income taxation system.

keywords : double taxation, Economical double taxation, Chinese income tax system, the way to control double tax
Student Number : 2014-22081